

연구보고서
2017-04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이성희·노용진

책머리에 부처

우리 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청년 고용률은 42.3%로 OECD 평균보다 10%p나 낮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률은 9.9%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은 22.7%로 우리 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 우리 경제는 성장률 증가가 둔화되고, 경제성장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지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괜찮은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채용장려금, 직접일자리사업, 창업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청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7년 정부의 일자리 정책 예산은 17조 5,000억 원(전년대비 10.4% 증가)인데, 이 중에서 청년층 일자리 대책 관련 예산은 2조 7,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했다. 정부는 2018년에도 청년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3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이 실제로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목표에 맞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 실효성이 높은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과제는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대기업, 공공부문 등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실제 일자리 수요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이들 중소기업들 중에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청년들이 장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임금 및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실제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이렇게 청년들이 괜찮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한 정책 심층분석을 하고 있다.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청년 참여자 수나 취업촉진 성과가 가장 높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지만 청년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하면서 기술을 쌓고, 중소기업도 기업의 기술적 특성과 조직문화에 적응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을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러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청년층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일자리 중 임금 및 근로조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한 단계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17년 12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직무대행 김 승 택

목 차

책머리에 부쳐

요 약	i
-----------	---

제1장 서 론	1
---------------	---

제1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책평가 필요성	1
---------------------------------	---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선행연구	3
-----------------------------	---

제3절 평가의 내용 및 방법	4
-----------------------	---

제2장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5
-----------------------------------	---

제1절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	5
-----------------------------	---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개요	5
-------------------------	---

2.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6
--------------------------	---

3.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	12
-------------------------	----

4.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사업	13
------------------------	----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22
--------------------------------	----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추진실적 개요	22
----------------------------------	----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투입예산 및 참여자 현황	24
------------------------------------	----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수 및 고용유지 현황	31
---------------------------------------	----

제3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35
--------------------------------	----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성과 분석	35
-------------------------------	----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근로조건 및 만족도	41
--------------------------------------	----

제4절 소 결	43
---------------	----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43
-------------------------------	----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이 주는 시사점	44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운영개선방안	46

제3장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실증분석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심으로	48
제1절 들어가는 말	48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모형 설정	49
1.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49
2. 연구방법론과 통계모형	52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현황 분석	54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54
2. 표본의 기본 특성: 개인 단위	55
제4절 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63
1. 개인 단위 분석결과	63
2. 기업 단위 분석결과	72
제5절 소 결	79

제4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실태조사(FGI)

제1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사항	83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현황	83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점검사항	88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FGI 실시	90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효과 분석	91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평가	91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다른 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효과	95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장애요인	96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의 중도퇴사 문제	96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의 애로사항	100

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104
4.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	106
제4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08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108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109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110
제5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와 정책개선방안	112
제1절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실질적 고용효과 평가	112
1.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평가	112
2.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113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16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116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119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121
참고문헌	123

포 목 차

<표 2- 1> 국민문화향유권확대사업 추진현황	7
<표 2-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8
<표 2- 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추진현황	9
<표 2- 4>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9
<표 2- 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 추진현황	10
<표 2- 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추진현황	11
<표 2- 7> 해외봉사단사업 추진현황	13
<표 2- 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현황	16
<표 2- 9>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16
<표 2-10>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추진현황	17
<표 2-1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	18
<표 2-12>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	19
<표 2-13> 박물관진흥 지원사업 추진현황	20
<표 2-14> 예술인력 육성사업 추진현황	21
<표 2-15> 해외산림인턴 지원사업 추진현황	21
<표 2-16> 청년 직접일자리사업(16개) 주요 추진실적	23
<표 2-17> 사업별 2013~2016년도 예산	24
<표 2-18>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성별(2015년 기준)	26
<표 2-19>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연령(2015년 기준)	27
<표 2-20>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취약계층(2015년 기준)	28
<표 2-21> 사업별 참여자의 참여 전 상태 및 참여기간 (2015년 기준)	29
<표 2-22> 사업별 참여자 반복참여(2015년 기준)	30
<표 2-23> 사업별 취업성과 : 종료 후 취업 및 민간부문 취업 (2015년 기준)	31

<표 2-24> 사업별 취업성과:6개월 및 12개월 내 취업 (2015년 기준)	32
<표 2-25> 취업 소요기간 평균(2015년 기준)	33
<표 2-26> 고용유지기간(2015년 기준)	34
<표 2-27> 투입예산 대비 참여인원 및 종료 후 취업자 수	36
<표 2-28>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효과	37
<표 2-29> 직접일자리사업별 취업달성 효과	39
<표 2-30> 직접일자리사업별 고용유지율	40
<표 2-31> 직접일자리사업별 임금복지	41
<표 2-32> 직접일자리사업별 만족도	42
<표 3- 1> 표본의 사업유형별 구성	55
<표 3- 2> 사업 참여자들의 월별 참여 분포	56
<표 3- 3> 사업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	58
<표 3- 4> 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구성	59
<표 3- 5> 사업 참여자들의 산업별 구성	60
<표 3- 6> 사업 참여자들의 임금 수준	62
<표 3- 7> 사업 참여자들의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약정임금 기준	62
<표 3- 8> 사업 참여자들의 진행 상황	64
<표 3- 9> 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별 분포 비교	65
<표 3-10>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67
<표 3-11>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68
<표 3-12> 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70
<표 3-13> 참여 기업들의 사업 활용 정도	73
<표 3-14> 참여 기업들의 청년인턴사업 대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근로자 비율: 구간별 분포	73

<표 3-15> 참여 기업의 재참여 비율: 2015년 대 2016년 대 2017년 ...	74
<표 3-16>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5
<표 3-17>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76
<표 3-18> 사업 유형별 고용 변화: 사업체 단위	78

그림목차

[그림 1-1] 청년(15~29세, 계절조정) 고용지표	1
[그림 4-1]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84
[그림 4-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계획	87
[그림 4-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기대효과(고용부)	88

요 약

1.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필요성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기준 9.9%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 청년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60개 사업에 2조 5,9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2016년 기준). 이러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주관부처별로는 문화부 7개, 국토부 2개, 고용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미래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각각 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정부가 시행하는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청년층 참여

가 많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추진과정 및 취업지원 성과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하고자 한다.

2. 정부의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유형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은 ① 공공업무지원형 ② 경기대응형 ③ 사회서비스형 ④ 노동시장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KDI, 2016).

①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② 경기대응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공공근로와 같은 직접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이러한 유형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없다.

③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사회봉사활동이나, 복지서비스 기관·단체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외봉사단 사업 등이 있다.

④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턴 포함)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글로벌현장학습, 박물관 진흥지원, 여성 경력단절 과학기술전문인력 경력복귀 지원사업 등이 있다.

나. 청년 직접일자리 참여인원 및 취업지원 실적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인원은 시장참여형이 3만 4,600명, 공공업무지원형이 7,900명, 사회서비스형이 600명 등 총 4만

3,300명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3만 3,1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업무지원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투입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 참여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 직접일자리사업(16개) 주요 추진실적)

(단위: 백만 원, 명)

	주관 부처	사업명	예산	참가 인원	사업 종료 후 취업자	민간 일자리 취업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15,300	663	10	8
공공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568	524	77	2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4,830	5,270	40	11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0,502	1,051	14	1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3,771	45	1	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12,776	-	-	-
	행자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5,111	411	33	4
	소 계		267,858	7,964	175	46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77,308	33,176	3,723	3,264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10,101	392	25	21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해외인턴)	3,270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4,500	89	19	16
	농진청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1,890	112	9	6
	문화부	박물관진흥 지원	3,675	298	30	8
		예술인력육성(예술인재교육)	4,568	503	95	21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지원	2,500	64	0	0
	산림청	해외산림 인턴지원	380	42	13	9
	소 계		208,192	34,676	3,914	3,345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취업자 수는 3,914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은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3,723명)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취업지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일자리 취업자 수는 3,345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참여자 중에서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3,2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① 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 DB에서 취업이 확인된 경우만 취업자로 산정 ② 사회서비스형이나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학(대학원) 재학생들이 참여해 사업종료 후 바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 사업참여 청년들의 경우 일단 취업을 하면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용종료가 이뤄진 청년들은 대부분 3개월, 6개월 이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3,723명의 취업자 중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가 2,457명으로 66%가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용 종료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581명(15%), 6개월 이내에 173명(4%)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예산투입 효율성(취업자 수/예산 10억 원)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실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 투입(10억 원) 대비 사업참가자 수, 사업종료 후 취업자 수를 분석해 보았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이 예산투입당 사업참가자 수, 취업자 수 등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해외산림인력육성, 예술인력육성 사업 등이 재정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재정투입 대비 취업성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공공업무지원형,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 수, 취업자 수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 투입(10억 원) 대비 사업종료 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예술인력육성, 해외산림인턴사업 등이 재정투입액 대비 사업종료 후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10억 원 예산 투입당 30명이 취업을 했고, 해외산림인력육성사업이 34명, 예술인력육성사업의 경우 20명이 취업해 취업자 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재정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고용효과 분석

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청년층들의 참여가 많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적인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 2016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의 전신인 중

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도 보완적으로 수행해서 양 사업의 고용효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먼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현황을 보면 2015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두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반대로 2017년은 청년인턴사업이 폐지된 뒤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유일하게 2016년 자료에서만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이 혼재되어 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이 표본 근로자들의 81.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2016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자 수가 적은 이유는 그 해에는 초기이고 시범사업이어서 참여자 수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나.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임금수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임금 수준을 보면 청년직접일자리 사업 비참여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현재 받는 임금 이외에 공제사업 적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약정 임금이나 초임 모두 법정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두 사업의 참여조건으로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기준을 설정한 결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다.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탈락률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중도탈락 비율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인턴사업은 약 11% 정도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서 2017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는 4.9%로

낮아지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선발만 진행한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중도탈락률을 잡으면 6.3% 정도로 약간 오르기 하지만, 여전히 2015~16년의 청년인턴사업보다는 많이 낮다. 다른 측면에서 수료 후 취업이나 조기 채용 등의 성과를 보면, 2017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선발만 되어 있는 참여자들을 제외한 경우)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중도탈락률도 11.4%를 보이고 취업 성과(조기 채용과 수료 후 취업)도 78.4%로서 2017년보다는 많이 낮는데, 이때는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유지 효과가 청년인턴사업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고용유지기간 비교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 반, 2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구간별 고용유지 성과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나 비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통계를 보면, 3개월 고용유지까지는 청년인턴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6개월 고용유지부터 격차를 벌리기 시작해서 9개월, 12개월, 1년 반 시점에는 상당한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고용유지 비율이 확인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는 특징적이게도 시간이 가도 아주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근로자들에게 누적되는 적립금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수급 실현 날짜도 가까워져서 이탈의 심리적 비용이 더욱 커

지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비율이 높으며,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마.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증대 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기업의 근로자 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기업단위로 측정된 근로자 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모두 양(+)의 고용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 중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고용효과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사업이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더 큰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	풀링
상수	-0.203 (0.094)	-0.189 (0.071)	-0.201 (0.037)	-0.204 (0.040)
청년내일 참여자 비율	-	0.029*** (0.011)	-	0.028*** (0.010)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두 사업 참여자 비율	0.009*** (0.000)	0.007*** (0.000)	0.006*** (0.000)	0.007*** (0.000)
약정 임금	0.086*** (0.020)	0.056*** (0.018)	0.036*** (0.008)	0.055*** (0.009)
2016년	-	-	-	0.004 (0.006)
2017년	-	-	-	-0.007 (0.012)
지역 및 업종 변수 생략				
R ²	0.076	0.075	0.184	0.085

주: * p<0.10, ** p<0.05 *** p<0.01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6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비참여 사업체 대비 고용증가분이 3.55명, 고용증가율은 6.67%p만큼 고용성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그 사업의 고용효과가 조금 더 낮아져서 비참여자 대비 고용증가분은 3.08명, 고용증가율은 4.8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인턴사업도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비참여자보다 2.33명의 고용증가분과 4.85%p만큼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6년 청년인턴사업은 2.99명의 고용증가분과 5.88%p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인턴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유형별 고용 변화 : 사업체 단위〉

		참여기업(A)	비참여기업(B)	격차(A-B)
2015년 (청년인턴)	고용규모 변화	3.248명	0.916명	2.332명
	고용증가율	10.883%	6.034%	4.850%p
2016년 (청년인턴)	고용규모 변화	3.098명	0.111명	2.987명
	고용증가율	9.684%	3.802%	5.883%p
2016년 (청년내일)	고용규모 변화	3.997명	0.448명	3.550명
	고용증가율	11.370%	4.705%	6.665%p
2017년 (청년내일)	고용규모 변화	3.355명	0.272명	3.083명
	고용증가율	9.524%	4.672%	4.852%p

주: 2015년과 2016년은 1년간 고용변화이고, 2017년은 11개월간 고용변화임.

바.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청년층들의 참여가 많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이들 두 사업은 모두 임금수준이 높은 청년 일자리 사업이고, 고용유지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 중도탈락률이 청년인턴사업보다 낮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고용유지 성과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나 비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로 볼 때,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표적인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만 몰릴 것이 아니라,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대상 FGI 결과

가. 우수인재 채용효과와 장기근속 유도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업참여를 통해 청년들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며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업 참여 이후에 2년 근속하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는 편

이었다. 이러한 목돈마련 기회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 내용이 기존 정규직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효과를 실감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구인중소기업 발굴의 어려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참여 구인사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참여하는 기업 측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고,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등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보니 중소기업 측에서는 선뜻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운영기관들이 취업알선 전문업체인데, 이들 운영기관들은 기존 청년인턴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기업을 발굴해 왔는데,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지원금이 별로 없다 보니 이들 중소기업이 사업참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있다.

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퇴사 이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퇴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① 취업한 회사에서 자기발전전망을 찾지 못하거나 ② 임금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 실망해서 퇴사하거나 ③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기업에 취업이 돼서 중도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채용되기 이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업하기 전에 대학 지도교수나 주변 친구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6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왔다. TV나 언론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기사도 많이 게재되고, 인터넷에도 집중 홍보를 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광고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작 대학 졸업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대상 범위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인재를 채용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숙련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표적인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 초기에 사업참여가 가능한 청년 대상자를 청년인턴사업, 일학습병행사업, 취업성공패키지 3개 사업 참여자로 제한해 놓았다.

이러한 경로설정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초기에 사업을 정착시키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을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근로조건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사업 초기에는 이렇게 참여경로를 제한해서 사업취지를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여경로 제한이 또 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FGI에서는 이런 장애요인이 확인되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들을 중소기업의 괜찮은 일자리에 장기근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전 경로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생각하면 참여대상을 제한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참여대상 폭을 넓히는 것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경로제한 없이 그냥 16~34세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임기준 조정 검토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 왔다. 이러한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규정은 2017년까지는 실효성이 있지만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7년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의 70%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고, 90.8%가 100인 이하 사업장인데 이들 중소기업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110% 지급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2017년 6월)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계속 높

이 올리면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축소(56%), 감원(41.6%) 또는 사업 종료(28.9%)로 대응할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기업의 약정임금 분석결과, 149만 원('17년 110%)~173만 원('18년 110%) 구간 사이에 약 66.4%의 참여자가 분포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2018년 최저임금인상 이후에도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참여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10%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의 연계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은 2년 근속을 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근속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중소기업에 맞는 기업특수적인 숙련형성도 되어 있고, 조직 문화에도 적응된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기업 생산성이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료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금이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에도 일부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금이나 지원 방식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에게 공제금 납입계좌 확인 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면 개인별 계좌를 개설한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6개월 단계마다 공제금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도 들어가서 공제기금이 쌓이도록 되어 있다.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신이 받을 목돈이 이렇게 계좌에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기업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심리적 지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자기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이 자신의 공제 계좌에 기금이 쌓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당신의 공제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 검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그만큼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가 되면 사업 참여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경험한 청년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해 당사자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명칭부터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바로 알기 쉽게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FGI에서는 현재의 사업명칭을 무슨 금융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먼저 명칭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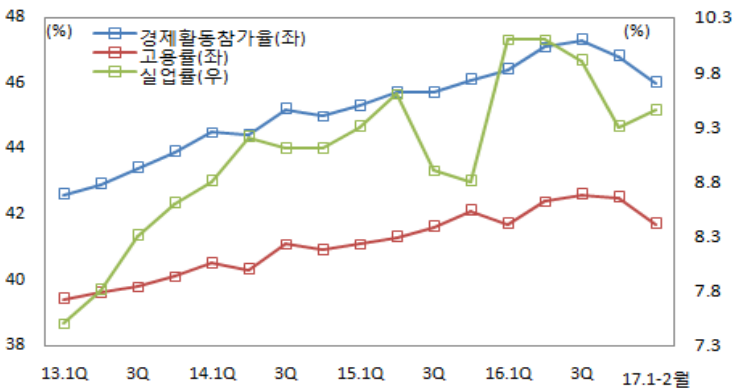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잘 이해하도록 하려면, 이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사업’,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같은 명칭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정책평가 필요성

우리나라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9.9%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10%p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청년층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1-1) 청년(15~29세, 계절조정) 고용지표



정부는 이러한 청년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고용서비스, 직업교육·훈련,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용정책 중에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으로 경기가 하락하거나,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부가 직접고용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들이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 청년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실증적인 정책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으로서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요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추진 현황과 취업지원 성과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통해,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정부는 각 부처의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실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효과가 큰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맞게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청년층의 참여가 많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추진과정 및 취업지원 성과에 대한 정책 심층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 심층평가를 통해 향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취업률을 높이고, 계속 취업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도출하며, 이를 위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선행연구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정책연구는 이규용 외(2011), 이영민 외(2015), 윤희숙 외(2016) 등 지속적으로 실증연구가 진행돼 왔으나,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규용 외(2011)의 연구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한 고용효과 실증분석을 시도하였고, 이영민 외(2015)의 연구는 청년고용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일 경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윤희숙 외(2016)의 연구는 정부 일자리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효과성 평가를 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의 전반적인 정책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영향을 평가한 선행연구들로는 남재량 외(2009), 류장수 외(2012), 김두순 외(2013), 류장수 외(2014), 류장수(2015), 박성익 외(2016) 등이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 남재량 외(2009)와 류장수 외(2012) 등은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이고, 김두순 외(2013)는 중소기업 인턴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해 산업연관고용효과 분석과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실태조사 분석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는 청년층 고용문제 전반에 대한 연구이거나,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부 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이 많았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은 별로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정책효과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한국고용정보원 등의 각종 행정자료, 통계청 자료, 고용부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3절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2016년 청년일자리 사업은 60개 사업에 2조 5,9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중에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주관부처별로는 문화부 7개, 국토부 2개, 고용부, 외교부, 행자부, 교육부, 미래부, 농진청, 산림청 등이 각각 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분석방법은 정부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자료를 토대로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투입, 사업참여자 현황,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 청년 취업지원 실적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자 한다.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사업 참여자 현황 및 취업지원 실적에 대한 계량적인 분석을 통해 취업지원 실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평가를 위해 사업별 예산 투입현황, 사업참여자 수, 취업률, 고용유지율 등을 분석하고, 각 사업별 취업지원실적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또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수행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FGI를 통해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장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제1절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현황¹⁾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개요

가.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 내용

청년층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직접 일자리 창출을 함으로써 청년층에게 취업경험을 제공하고 고용단절 기간을 줄이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구조적인 실업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는 정책수단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수단이므로 이러한 경기침체나 구조적인 실업에 대응해서 단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청년 실업률이 10% 안팎까지 올라가고, NEET 인구가 100만 명을 상회하는 구조적인 실업상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2016년의 경우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1) 1절의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주요내용은 고용부, '2014 청년 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 '2015 청년 고용정책 사업 및 제도'에서 사업소개 발췌 인용.

나.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유형

청년직접일자리 사업은 ① 공공업무지원형 ② 경기대응형 ③ 사회서비스형 ④ 노동시장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KDI, 2016).

①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있다.

② 경기대응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공공근로와 같은 직접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에는 이러한 유형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없다.

③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사회봉사활동이나, 복지서비스 기관·단체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외봉사단 사업 등이 있다.

④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턴 포함)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글로벌현장학습, 박물관 진흥지원, 여성 경력단절 과학기술전문인력 경력복귀 지원사업 등이 있다.

2.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

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의 목적은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휴관 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자료 정리 등을 통한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있다.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공도서관 분야의 경우 도서관 관련 전문 인력이며 문헌정보학 전공자 또는 사서자격 보유자가 우선 대상이나 인력 수급 문제 시 관련 학문전공자 채용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분야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및 도서관 근무 경력자이

〈표 2-1〉 국민문화향유권확대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안)	비고
예산	15,568	21,794	29,376	계속
참여자 수	1,272	1,537	1,626	

고 국립박물관 분야는 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전공자,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야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등) 중 미술 관련학과 출신자를 우대하며 미정리 유물 등록 분야는 박물관 관련 전공자(고고학, 미술사학, 박물관학 등)로서 학사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연중 지속 채용하도록 하며 월 근로시간은 160~209시간(주당 근로일)이며 임금은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50만 원(4대보험 지원) 수준이다.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의 2015년 추진 실적을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및 도서관 자료정리 등을 통해 1,224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시간을 연장하면서 10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등록 및 자료정리 분야에서 227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간개장으로 1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목적은 지역 내에서 아동·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연령계층의 문화예술 체험·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성 및 감수성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수요기반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예술강사(학교, 유아, 사회,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등)이며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문화예술분야 경력자 등이다. 학교 예술강사, 사회 예술강사, 유아 예술강사, 꿈의 오케스트라 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인건비

〈표 2-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84,830	97,868	98,538	계속사업
참여자 수	7,679	8,594	8,200	

지원은 시간당 4만 3,000원이고 산재,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3대보험이 제공되며 교통비와 도서벽지 수당도 지급되고 계약기간은 대부분 10개월로 되어 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문화예술교육 수혜자는 '16년 기준 300만 명이며 8,594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으로 전국 초·중·고교 9,027개교에 예술강사 5,357명을 지원했고 수혜자는 287만 명이었다.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을 통해 전국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 608개소를 대상으로 예술강사 492명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교정시설, 군부대,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에 예술강사 955명을 지원했고, 유아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예술강사 126명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지역협력 거점기관 교육강사 427명을 지원했다.

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지역단위 생활체육 현장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참가자에게 체육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만 60세 이하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이다. 지원 기간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이며 전국 17개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활동비 지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을 지원한다.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은 청년체육인 양성과,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16년에 2,6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지역의 유아에

〈표 2-3〉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30,502	32,121	33,717	계속
참여자 수	2,480	2,600	2,600	

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지역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16년 1,073,881건, 18,931,632명을 지도).

라.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장애인생활체육지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목적은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맞게 시도 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특수체육전공자(석·박사 및 졸업예정자 포함), 국가자격(장애인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공단) 및 국가공인자격(생활체육지도자 1~3급, 경기지도자 1~2급/체육과학연구원) 보유자,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양성교육 수료자(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가맹, 인정, 유형별)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1~3급)이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법정 보험료 및 퇴직충당금 포함).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17개 시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아졌고, 335명의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기금 146명, 지방비 189명).

〈표 2-4〉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안)	비고
예산	3,771	3,771	6,032	계속
참여자 수	146	146	450 (지방비 5:5 매칭)	

10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적극적인 활동으로 생활체육 수혜인원은 1,221,831명이었고, 생활체육 참여율은, '15년 15.8%에서 '16년 17.7%로 증가하였다.

마.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의 목적은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스포츠클럽 지도를 실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스포츠 강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이고 체육지도자란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이다. 지원 내용은 스포츠지도사 인건비 월 193만 7,000원을 지원하고 1년에 11개월을 지원한다.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사업으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2,098명의 스포츠 강사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으로 교사들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표 2-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12,776	12,776	10,868	계속
참여자 수	2,408	2,098	2,450	

주: 지자체 보조(국고 20%, 교육청 80%)

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의 목적은 민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국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실적관리 등의 전문 인력을 지원, 사회적 일

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 운영, 자원봉사자 상담 및 관리, 홍보 등을 담당하고 전산 코디네이터는 1365자원봉사시스템 운영, 자원봉사 실적 등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내용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49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공통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 상근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경력자이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선발하고 있다.

교육코디네이터의 경우 대학(2년제 포함)에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법상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가 지원 가능하다.

전산코디네이터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DB 관련 과목 포함) 보유자,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이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국민 참여가 확산되어 참여인원이 '15년 496명, '16년 496명이었다.

〈표 2-6〉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5,111	5,111	5,194	계속 (국비 50%, 지방비 50%)
참여자 수	496	496	494	

3.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사업

가. 해외봉사단 지원사업(ODA)

해외봉사단 지원사업의 목적은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개도국과 우리나라의 우호협력과 상호이해 증진, 봉사활동을 통한 자아실현과 성장 도모에 있다.

지원 대상 및 요건은 봉사단별 지원 요건이 상이한데, KOICA 봉사단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해당직종 전문성 보유자, KOICA 자문단은 대한민국 국적 현직·퇴직전문가로 학사 이상 학위,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NIPA 자문단은 만 50세 이상 퇴직(예정)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자, 과학기술지원단은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이며, IT봉사단은 만 18세 이상 청년 및 일반인이고 청년봉사단은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일단 모든 봉사단에 항공료 및 보험료가 전액 지원되고, 지원금과 지원기간은 봉사단별로 상이하다.

KOICA 봉사단은 현지생활비(월평균 \$548), 현지주거비(월평균 \$383), 국내정착금(월 50만 원) 등을 지원받으며 활동기간은 2년이다. KOICA 자문단과 NIPA 자문단은 현지생활비 및 현지주거비(월평균 \$4,000)와 활동지원비(월평균 \$500) 등을 받으며 활동기간은 6개월~1년이다.

과학기술지원단은 현지생활비 및 주거비(월평균 120만 원) 등을 지원받으며 기간은 1년이다. IT봉사단은 현지생활비 및 주거비(월평균 60만 원)를 지원받고 활동기간은 1~6개월이다.

청년봉사단의 경우 지원금은 미지급되지만 팀별 리더(PM) 직원에게 현지 체류비 및 활동지원비가 지급되고 활동기간은 2~3주이다.

해외봉사단 지원사업으로 글로벌 인재가 양성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청년층의 봉사단 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4,810명이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외봉사를 통해 △분야 전문성 △개도국 지역 전문성 △언어 능력 개발 등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표 2-7〉 해외봉사단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115,300	117,497	114,968	계속
참여자 수	4,814	4,810	4,098	

최근에는 취약계층 참여가 강화되어 KOICA 봉사단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예정)자 대상 ‘드림봉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년 중기봉사단을 통해 청년층에게 학업과 봉사활동을 동시에 경험하고 기업이 원하는 현장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KOICA-UNV 대학생봉사단은 UN 산하기구인 UNV와 협력하여 한국 청년들을 개도국 내 UN기구로 파견, 현지 생활 및 국제무대 경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해외봉사단 사업은 귀국단원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귀국단원 대상 경력개발 및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하였고, KOICA 개발협력 커리어센터 운영을 통해 채용정보 제공, 취업 상담, 개발협력 취업박람회 실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내외 취·창업에 적극 지원했다.

4.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사업

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²⁾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2009~2017년). 중소기업 청년 인턴 사업은 '08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중소기업에서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

2)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추진실적과 취업자 수는 뒤에 3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에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에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은 5인 이상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5인 미만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인턴사업 참여 청년의 중도탈락률이 3년 평균 40%를 초과하거나, 정규직전환율이 30% 미만인 경우는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중소기업), 50만 원(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정규직 전환하고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390만 원(6개월 후 195만 원, 12개월 후 195만 원) 정액 지원한다(비자발적 이직 시 부지급, 자발적 이직 시 일할 계산).

취업지원금은 인턴 청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한다(정규직 전환 1개월 20%, 6개월 30%, 1년 50% 지급).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³⁾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취업지원 3개 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이다.

사업참여 대상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이다(벤처지원업종 등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내용은 고용부(2017), ‘청년내일채움공제 안내 브로슈어’에서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실적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일부 기업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지원내용은 사업참여 청년에게는 기업에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 적립(매월 12.5만 원)시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 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⁴⁾

사업참여 중소기업에는 청년 지원 사업 3개 사업별로 청년공제 참여기업에 지원하는데,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수료자를 정규직 전환한 경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이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동안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해외인턴십)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의 목적은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 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보낼 경우 해당 기업에 1년간 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해외건설인력을 양성하고,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현장을 보유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며 취업취약계층, 청년 채용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채용 건설기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 내용은 1개 업체당 최대 2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파견비(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180만 원 및 훈련비 월 80만 원 지원으로 1인당 1년간 1,140만 원을 지원한다(34세 이하 청년 지원자 고용 시 월 30만 원 추가 지급).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으로 '16년까지 총 577명의 해외 현장훈련을 지원하여 참여자의 현장경험 축적을 통한 취업역량을 강화했고,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였다.

4) 2017년 추경예산편성에 의해서 정부에서 400만 원을 더 지원해 2년 근속 시 1,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표 2-8〉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3,270	3,270	2,960	
참여자 수	304	273	190	

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항공인턴십지원)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목적은 ‘차세대 항공리더 육성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항공 핵심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일자리로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조종인력 분야는 학력조건 무관, 항공신체검사 1종, 토익 700점 이상(항공대 750점 이상), 군필 또는 면제자이고 기타 분야는 위탁 대학 및 인턴십 실시기업의 채용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지원 내용은 항공 조종인력, 특성화대 석·박사급 인력에 대한 항공사인턴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항공분야 기초인력 4개 분야 375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5년간 2,550명).

하늘 장학생 선발, 여름 항공캠프 운영 등 항공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상에 대한 정책 홍보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총 446명의 조종인력을 양성하여 국내 항공사와 운항학과 교관 등으로 취업(취업률 67.2%)하였다.

〈표 2-9〉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4,500	4,350	3,359	계속
참여자 수	560여명	500여명	375여명	

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 복귀 지원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의 목적은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누수를 방지하고 우수인재 활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경력단절 및 학위 취득 후 미취업 중인 여성 과학기술인이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이고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를 지원하는데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 석사는 2,100만 원, 박사는 2,3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연차별 교육(연 1회)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으로 2012~16년까지 446명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현장 복귀를 지원하였다. 경력단절된 여성 과학기술인들을 경력복귀 준비 - 유지 - 성장 등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복귀자 풀(POOL) 확대, 준비교육, 역량진단서비스 등 사전 복귀준비를 지원했으며 연구개발 동향, 일-가정양립 등 복귀준비 단계의 취업역량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정기적 취업정보 제공 및 지원종료자 대상 커리어 컨설팅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경력안착을 지원하였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복귀 및 지속적인 경력 유지관리를 통한 우수 연구인력 누수 방지와 안정적인 연구복귀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 사업 수혜자의 경력유지도가 '15년 72.2%에서 '16년 75.3%로 증가하였다.

〈표 2-10〉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2,500	2,800	4,000	
참여자 수	116	133	160	

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학생들에게 해외 산업현장 실무경험 등 다양한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전문)대학생(일부 졸업생도 지원 가능)이며, 소정의 학점 및 외국어 능력을 충족하고 사업별 선발절차에 의해 선정된다.

지원 대상 청년에게는 항공료, 체재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또는 전액)를 사업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해외 파견 기간 동안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한다.

국립국제교육원이 수행하는 WEST 사업의 참여기간은 6, 12, 18개월이며 참여대상은 대학·전문대 재학생 및 1년 이내 졸업생이고 정부지원금은 355만~2,312만 원이다.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참여기간은 4~6개월이고 참여대상은 대학 재학생(4학기 이상 수료자)이며 정부지원금은 250만~500만 원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의 참여기간은 4~6개월이며 참여대상은 전문대 재학생이고 정부지원금은 450만~800만 원이다.

〈표 2-11〉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10,101	8,317	8,475	계속
참여자 수	1,033	771	711	

사.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목적은 농과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취업 전 해외농업기술개발(KOPIA)센터에서 해외농업에 관한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표 2-12〉 해외농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안)	비고
예산	1,890	1,809	1,775	계속
참여자 수	112	101	70*	

주: * 사업예산 내 지원혜택이 큰 책임·선임연구원(35) 선발을 확대함으로써 연수생 선발가능 인원(70)이 축소됨. 책임·선임연구원 선발 확대 근거: 국정감사, '16년 예결위 등 외부의견 반영.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는 개도국 현지(17년 20개국)에서 ‘맞춤형 농업기술 공동개발 및 보급,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농업기술 협력 증진’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본 사업 참여자는 KOPIA 센터에서 전공 관련 실습과제 수행과 주재국의 농업기술 정보 분석 및 KOPIA 센터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연구원의 경우 농과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 이상(선임·책임), 1년 미만 연구원은 농과계 대학 졸업자(선임), 통역연구원은 스페인어, 불어 전공 대학 졸업자 이상이고, 연수생은 농과계 대학교 재학생이다. 선임은 대학 졸업자(학사), 책임은 대학원 졸업자(석·박사)이다.

지원 내용은 연수비용의 경우 연구원 180만~200만 원, 연수생 100만 원이며 항공료를 지원하고, 연수기간은 연구원 1년 이상/1년 미만이고 연수생 6개월이다.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농업 인재를 864명 양성(2009~2016년)하여,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센터에 연간 100여 명을 파견하였다. 협력사업 참여와 해외 농업현장 학습을 통해 전공능력을 배양하고 국제적 농업 환경을 이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아. 박물관진흥 지원사업(사립박물관 학예인력, 문화에듀케이터 지원)

박물관진흥지원 사업의 목적은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학예인력, 교육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박물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표 2-13〉 박물관진흥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3,675	3,675	3,491	계속
참여자 수	300	312	209	

문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다.

지원 대상은 학예인력 분야의 경우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및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이고, 교육인력 분야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및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이다.

지원 내용은 학예인력 월평균 138만 원, 교육인력 월평균 125만 원이며 지원금은 학예사 등급 및 자격증 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박물관진흥지원 사업으로 정부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운영이 활성화되고 312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전문 인력을 통한 박물관 소장 자료 관리와 활용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초·중·고 5일제 수업 전면실시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응하는 박물관 교육이 운영되었다.

자. 예술인력 육성사업(예술인력 재교육)

예술인력육성 사업의 목적은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들의 인턴 연수를 통해 향후 진로에 필요한 현장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예술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다.

지원 대상은 연수단원 분야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다(단, 문화예술분야 비전공 졸업자 중 문화예술분야 전공에 준하는 자격증, 교육과정 이수자는 예외 인정).

예술인력 육성사업의 지원내용은 공모 선정기관의 연수단원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며, 연수단원에 대해 월 인건비로 130만 원 및 4대 보험을 지원한다.

예술인력육성 사업은 '16년 기준으로 지원단체 수가 총 246개(국공립 예술단체: 58개, 민간예술단체: 188개)이고 연수단원 지원은 334명(국공

〈표 2-14〉 예술인력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안)	비고
예산	4,568	4,568	4,016	계속
참여자 수	346	334	307	

립 예술단체: 128명, 민간예술단체: 206명)이다.

'16년 기준으로 연수단원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25명(국공립 예술단체: 7명, 민간예술단체: 18명)이고 2013~16년 총 정규직 전환실적은 84명이다(국공립 예술단체: 11명, 민간예술단체: 73명).

차. 해외산림인턴 지원사업

해외 산림인턴 지원 사업의 목적은 산림분야 해외 직장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과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을 통한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지원에 있다.

지원 대상은 산림관련 대학(원)·전문대 졸업예정자, 졸업 후 미취업자, 재·휴학생(5학기 이상 수료자),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 산림관련업체 2년 이상 종사자 중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청년이다(35세 이하).

지원내용은 해외근무일 경우 체재비(800천~1,400천 원/월, 급지별 차등지원), 왕복항공료(실비), 파견 준비비(한도 1,200천 원) 등이며 국내근무는 1,327천 원/월(하한액 - 국고 보조율 70%)이고 지원기간은 6개월(탄력운영 4~8개월)이다.

〈표 2-15〉 해외산림인턴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 원, 명)

	'15년 실적	'16년 실적	'17년 계획	비고
예산	380	286	286	계속
참여자 수	42	19	30	

해외 산림인턴 지원 사업으로 2009~16년 기간 동안 15개국 36사업장에 201명을 선발·파견했고 누적 취업률은 61%(기업체 선발인원 기준 113명 취업)로 산림분야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취업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였다.

제2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 분석⁵⁾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주요 추진실적 개요

가.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규모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투입예산을 보면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 중에서 공공업무지원형이 2,67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형이 2,081억 원, 사회서비스형은 1,15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2016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별로 보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 1,773억 원, 해외봉사단 사업에 1,153억 원 등으로 가장 많은 예산투입이 되고 있다.

부처별로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848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305억 원), 국민문화향유권확대사업(155억 원) 등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1,556억 원으로 문화체육 관련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나. 직접일자리 참여인원 및 취업지원 실적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인원은 시장참여형이 3만 4,600명, 공공업무지원형이 7,900명, 사회서비스형이 600명 등 총 4만 3,300명이

5)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실적은 한국고용정보원(2017)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 보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3만 3,1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업무 지원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투입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 참여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취업자 수는 3,914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은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3,723명) 사업 참여 이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청년 직접일자리사업(16개) 주요 추진실적

(단위: 백만 원, 명)

	주관 부처	사업명	예산	참가 인원	사업 종료 후 취업자	민간 일자리 취업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15,300	663	10	8
공공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568	524	77	2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4,830	5,270	40	11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0,502	1,051	14	1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3,771	45	1	0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12,776	-	-	-
행자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5,111	411	33	4	
		소 계	267,858	7,964	175	46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77,308	33,176	3,723	3,264
	교육부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10,101	392	25	21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해외인턴)	3,270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4,500	89	19	16
	농진청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1,890	112	9	6
	문화부	박물관진흥 지원	3,675	298	30	8
		예술인력육성(예술인재교육)	4,568	503	95	21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지원	2,500	64	0	0
	산림청	해외산림 인턴지원	380	42	13	9
		소 계	208,192	34,676	3,914	3,345

민간일자리 취업자 수는 3,345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참여자 중에서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가 3,2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에 비해 취업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① 사업 종료 후 고용보험 DB에서 취업이 확인된 경우만 취업자로 산정 ② 사회서비스형이나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학(대학원) 재학생들이 참여해 사업종료 후 바로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투입예산 및 참여자 현황

가.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예산은 2017년의 경우 5,444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중에서 노동시장참여형 사업이 2,45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공공업무지원형에 1,837억 원,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1,149억 원이 투입되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 중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이 2,456억 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7〉 사업별 2013~2016년도 예산

	주관 부처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	-	115,300	117,497	114,968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	-	15,568	21,794	29,37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4,400	84,330	84,830	97,868	98,538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27,081	30,502	30,117	32,121	33,717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2,893	2,893	3,771	3,771	6,032
	초등학교스포츠클ubs 배치지원	53,219	13,104	12,776	12,776	10,868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4,740	4,870	5,111	5,111	5,194	

〈표 2-17〉의 계속

	주관 부처	사업명	예산(백만 원)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55,530	184,800	177,308	42,001	24,565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20,820	11,974	10,101	8,317	8,475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해외인턴십)	4,792	3,420	3,270	3,270	2,960
		항공전문 인력양성	-	-	4,500	4,350	3,359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890	1,890	1,874	1,809	1,775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	-	3,675	3,675	3,491
		예술인력육성	-	-	4,568	4,568	4,016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2,561	2,561	2,500	2,800	4,000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254	380	380	286	286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공공업무지원형 사업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의 경우 큰 변동이 없는 반면에 노동시장참여형 사업의 경우 매년 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증감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참여형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의 취업실적에 따라 예산투자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현황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참여자 현황을 보면 시장참여형이 3만 4,600명, 공공업무지원형이 7,900명, 사회서비스형이 600명 등 총 4만 3,300명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3만 3,1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2만 3,600명, 여성이 1만 9,000명으로 남성 청년들의 참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남성 참여자가 2만 1,386명, 여성 참여자

〈표 2-18〉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성별(2015년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	참여자(명)	성별(명)	
				남	여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663	299	364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524	116	40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270	872	4,398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051	408	643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45	26	19	
초등학교스포츠클ubs 배치지원		-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411	84	327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3,176	21,386	11,790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392	107	285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십)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89	23	66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12	37	75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298	74	224
		예술인력육성	503	131	372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64	39	25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42	31	11
합 계				23,633	19,007

가 1만 1,790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의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반면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여성 참여자의 비중이 높아, 이 분야에 대한 여성 참여자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 청년(29세 이하)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중년(30~49세)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주요 대상을 35세 미만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15~34세 청년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표 2-19〉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연령(2015년 기준)

	주관 부처	사업명	참여자 (명)	연령(명)			
				청년 (29세 이하)	중년 (30~49세)	장년 (50~64세)	고령 (65세 이상)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663	315	136	172	40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524	203	249	65	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270	1,397	3,619	250	4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051	346	671	34	0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45	27	17	1	0
		초등학교스포츠클럽 강사배치지원	-	-	-	-	-
	행자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411	157	233	21	0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33,176	30,067	3,109	0	0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392	392	0	0	0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 양성 (해외인턴십)	-	-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89	88	1	0	0
	농진청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112	110	2	0	0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298	73	168	49	8
		예술인력육성	503	428	75	0	0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64	17	47	0	0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42	41	1	0	0
	합 계	42,640	33,661	8,328	592	59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회계층별 현황을 보면 전체 참여자 4만 2,000명 중에서 취약계층 참여자는 2,2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은 청년층 중에서도 취약계

〈표 2-20〉 사업별 참여자 특성 : 취약계층(2015년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	참여자(명)	취약계층(명)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663	101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524	20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270	29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051	509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45	42	
초등학교스포츠클럽 배치지원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411	323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3,176	-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392	125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쉽)	-	-
		항공전문 인력양성	89	20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12	47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298	219
		예술인력육성	503	311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64	17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42	11
합 계			42,640	2,223

층을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 참여자 특성을 확인 하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실제 취약 계층 참여비중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참여 이전 취업현황을 보면 6개 월 이상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이전 취업현황이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통계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

〈표 2-21〉 사업별 참여자의 참여 전 상태 및 참여기간(2015년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	참여 전 상태(명)			참여기간 (일)
			이력 없음	상실기간 6개월 이내	상실기간 6개월 이상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239	190	234	162.4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37	158	229	24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27	4,444	399	304.7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74	132	645	330.4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15	5	25	308
		초등학교스포츠클럽 강사배치지원	-	-	-	-
	행자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60	113	238	309.5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4,720	6,061	12,395	74.2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251	50	91	91.2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십)	-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53	8	28	160.9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76	13	23	173.8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52	56	190	264.7
		예술인력육성	189	170	144	216.7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31	11	22	163.9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26	6	10	148.3
	합 계	16,550	11,417	14,673	211.1 (평균)	

211일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반복참여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전체 참여자 5,270명 중에서 4,322명이 반복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지도자 교육활동지원사업의 경우도 1,051명 중 반복참여자가 679명으로 반복참여자 비중이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경기침체나 구조적인 실업에 대응해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성격이 강한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고용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2〉 사업별 참여자 반복참여(2015년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	반복참여(명)	
			비해당	반복참여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661	2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375	14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948	4,32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372	679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45	-
		초등학교스포츠팀강사 배치지원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341	70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3,149	27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391	1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십)	-	-
		항공전문 인력양성	89	0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12	0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222	76
		예술인력육성	483	20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64	0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42	0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수 및 고용유지 현황

가.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수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후 취업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에서 3,723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사업에서는 취업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청년리더 사업,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종료 후 취업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민간부문 일자리에 취업한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청년인턴제가 3,264명으로 사업종료 후 취업자 대부분이 민간부문에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3〉 사업별 취업성과 : 종료 후 취업 및 민간부문 취업(2015년 기준)

	주관 부처	사업명	종료 후 취업 (명)	민간일자리(명)	
				민간부문 취업	미취업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0	8	655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77	22	50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0	11	5,259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4	1	1,050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1	0	45
	행자부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	-	-	-
		자원봉사활성화지원	33	4	407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3,723	3,264	29,912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25	21	371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해외인턴쉽)	-	-	-
		항공전문인력양성	19	16	73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9	6	106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30	8	290
		예술인력육성	95	21	482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	0	64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13	9	33	

사업종료 후 민간부문 취업자 수는 공공업무지원형의 경우 사업종료 후 취업자 중에 민간부문 취업자가 소수에 불과해 주로 공공부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시장참여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민간부문 취업자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사업종료 후 6개월, 12개월 내 취업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성고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종료 후 기간에 상관없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사업별 취업성과 : 6개월 및 12개월 내 취업(2015년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	6개월 내 취업(명)		12개월 내 취업(명)	
			비해당	6개월 내 취업	비해당	12개월 내 취업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653	10	653	10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454	70	447	7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230	40	5,230	4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037	14	1,037	14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44	1	44	1
		초등학교스포츠클럽	-	-	-	-
		강사배치지원	-	-	-	-
	행자부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379	32	378	33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30,135	3,041	29,453	3,723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374	18	367	25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쉽)	-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73	16	70	19
	농진청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107	5	103	9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268	30	268	30
		예술인력육성	409	94	408	95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64	0	64	0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29	13	29	1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6개월 이후에 3,041명에서 12개월 이후에 3,723명이 취업하는 등 시간이 지나면서 취업성고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취업자의 취업 소요기간을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일 안팎으로 긴 반면, 공공업무지원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30~8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장참여형의 경우 민간부문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공공업무지원형의 경우 공공부문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표 2-25〉 취업 소요기간 평균(2015년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	취업소요기간 평균(일)		
			6개월 내 취업	12개월 내 취업	민간부문 취업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85.7	85.7	76.3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7.2	48	56.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1.5	51.5	34.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39.1	39.1	32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58	58	0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		-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30.7	38.7	108.8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75	103	101.7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112.2	144.2	141.2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십)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96.6	113.9	119.9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05	150.6	179.5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49.9	49.9	41.8
		예술인력육성	43.9	45.7	39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	-	-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67.3	67.3	59.1

사업참여자와 취업자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경우 민간 부문 취업에 10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 사업 참여 청년들의 경우 일단 취업을 하면 1년 이상 근속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용종료가 이뤄진 청년들은 대부분 3개월, 6개월 이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6〉 고용유지기간(2015년 기준)

	주관부처	사업명	고용유지기간(명)					
			3개월 내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년 이상	계속 근무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	1	0	0	0	6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4	3	1	0	0	14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0	0	0	0	9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	0	0	0	0	0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	-	-	-	-	
	초등학교스포츠 강사 배치지원	-	-	-	-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0	1	0	0	0	3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581	173	53	0	0	2,457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5	1	0	0	0	15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십)	-	-	-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1	2	0	0	0	13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	0	0	0	0	5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0	0	0	0	0	8
		예술인력육성	2	0	0	1	0	18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	-	-	-	-	-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5	0	0	0	0	4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3,723명의 취업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2,457명으로 66%가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고용종료한 경우는 3개월 이내에 581명(15%), 6개월 이내에 173명(4%)이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절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추진성과 분석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성과 분석

가.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예산투입 효율성(취업자 수/예산 10억 원)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실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 투입(10억 원) 대비 사업참가자 수, 사업종료 후 취업자 수를 분석해 보았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이 예산투입당 사업참가자 수, 취업자 수 등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해외산림인력육성, 예술인력육성 사업 등이 재정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재정투입 대비 취업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공공업무지원형,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 수, 취업자 수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 투입(10억 원) 대비 사업 참가자 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예술인력 육성, 해외산림인턴사업 등이 재정투입액 대비 사업참가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10억 원 예산 투입당 187명이 참여했고, 예술인력육성사업, 해외산림인력육성사업이 각각 110명으로 사업참가자 수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외봉사단,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항공전문인력양성, 과학기술연구회 지원사업의 경

우 재정투입에 비해 참가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 투입(10억 원) 대비 사업종료 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예술인력육성, 해외산림인턴 사업 등이 재정투입액 대비 사업종료 후 취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10억 원 예산 투입당 30명이 취업을 했고, 해외산림인력육성사업이 34명, 예술인력육성사업 20명이 취업해 취업자 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재정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외봉사단 사업, 예술문화교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장애인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투입 10억 원당 사업종료 후 취업자가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7> 투입예산 대비 참여인원 및 종료 후 취업자 수

	주관 부처	사업명	2015 예산 (백만 원)	10억 원당 참가인원	10억 원당 종료 후 취업자 수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15,300	5.8	0.1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5,568	33.7	4.9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4,830	62.1	0.5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30,117	34.9	0.5
장애인체육활성화지원		3,771	11.9	0.3	
초등학교스포츠클ubs 배치지원		12,776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5,111	80.4	6.5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77,308	187.1	30.0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10,101	38.8	2.5
	국토부	글로벌청년 리더양성 (해외인턴십)	3,270	-	-
		항공전문 인력양성	4,500	19.8	4.2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874	59.8	4.8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3,675	81.1	8.2
		예술인력육성	4,568	110.1	20.8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2,500	25.6	-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380	110.5	34.2	

나.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 모집 목표 달성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사업 참여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모집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업참여자 모집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업무 지원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사업 참여자 모집비율이 높은 반면,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모집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28〉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효과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참여자 모집 효과		
			모집총족 비율(%)	취약계층 참여총족 비율(%)	비경제 활동인구 참가비율(%)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16.8	127.0	36.0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09.3	30.0	26.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01.2	20.0	8.1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00.0	100.0	26.1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106.2	100.0	33.3
		초등학교스포츠프로그램 배치지원	80.3	120.0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3.6	120.0	14.6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68.8	-	44.4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95.3	440.0	64.0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십)	101.3	150.0	-
		항공전문 인력양성	98.9	1000.0	59.6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93.3	45.0	67.9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136.8	60.0	17.4
		예술인력육성	138.5	45.0	37.6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125.2	35.0	48.4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105.0	190.0	61.9	

사업참여자 모집충족비율에서 사회서비스형과 공공업무지원형은 대부분 100%를 초과했고, 시장참여형 사업 중에서도 글로벌청년리더양성, 박물관진흥사업, 예술인력육성, 과학기술연구회운영비지원, 해외산림지원 사업도 모집비율 100%를 초과했다.

반면에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각각 68%, 80%에 그쳐 사업참여자 모집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사업참여자 중에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공업무지원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취약계층 참여비율을 목표치의 100% 이상 달성한 반면,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 중 일부는 취약계층 참여비율이 목표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박물관진흥, 예술인력 육성, 과학기술연구회 운영비 지원사업의 경우 취약계층 참여 목표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사업참여자 중 이전에 비경제활동인구였던 청년의 참여비율을 분석한 결과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참여가 많은 반면,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참여 비중이 낮았다.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비경제활동 출신자의 참여가 많은 것은 이들 사업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시장참여를 유인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청년취업 효과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들을 취업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청년직접일자리 사업의 민간부문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과 항공전문인력양성사업, 예술인력육성 사업 등이 민간부문 취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 등의 경우는 민간부문 취업성공률이 1%도 안 돼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취업지원효과를 보기 위해 평균 취업소요

〈표 2-29〉 직접일자리사업별 취업달성 효과

	주관부처	사업명	취업성과	
			민간부문 취업률(%)	평균취업 소요기간(일)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1.3	162.1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4.3	163.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0.1	121.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0.3	140.8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	
초등학교스포츠포즈강사 배치지원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0.9	157.3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3.0	205.5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1.2	137.7
	국도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해외인턴십)	-	-
		항공전문 인력양성	21.0	122.4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	-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3.5	103.3
		예술인력육성	8.2	145.1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	-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24.2	112.4	

기간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100~160일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취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종료 후에 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라.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 효과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이후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취업 이후 안정적인 고용유지 효과를 분석한 결과 3개월 고용유지비율이 60%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에 일단 취업에 성공하면 3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고용유지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150일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안정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박물관진흥지원,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예술인력육성지원, 해외산림인턴지원, 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등의 평균 고용유지기간이 140일을 넘어 상대적으로 고용유지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0〉 직접일자리사업별 고용유지율

	주관부처	사업명	고용유지율	
			고용유지율 (6개월, %)	고용유지기간 (일)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60.0	90.0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59.5	91.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66.7	143.7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50.0	183.0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
		초등학교스포츠클ubs 배치지원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66.7	129.5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67.7	114.5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22.2	104.3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해외인턴쉽)	-	-
		항공전문 인력양성	65.2	138.0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	-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83.3	229.3
		예술인력육성	78.3	151.8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	-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20.0	131.6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근로조건 및 만족도

가.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자 근로조건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대체비율은 대부분 2% 미만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4대 보험 적용비율을 보면 대부분 4대 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봉사단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의 경우는 3개 보험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 직접일자리사업별 임금복지

	주관부처	사업명	임금복지	
			최저임금 대체비율(%)	사회보험적용 (개)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	3.0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4	4.0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7.2	3.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2.1	4.0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1.2	4.0
		초등학교스포츠클ubs 배치지원	1.6	4.0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5	4.0
노동시장 참여형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0.6	4.0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	-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해외인턴쉽)	0.8	-
		항공전문 인력양성	1.7	4.0
	농진청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1.0	4.0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1.3	4.0
		예술인력육성	1.0	4.0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2.1	4.0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1.0	4.0	

나.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참여자 만족도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무, 소득, 근무시간, 근무관리,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직무만족도나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소득수준이나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32〉 직접일자리사업별 만족도

	주관 부처	사업명	만족도(점)				
			직무에 대한 만족 수준	소득에 대한 만족 수준	근무 시간에 대한 만족 수준	근무 관리 만족 수준	취업 지원 서비스 만족 수준
사회 서비스형	외교부	해외봉사단(ODA)	55.0	65.0	40.0	25.0	45.0
공공 업무 지원형	문화부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74.2	36.7	66.7	65.0	55.8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3.1	33.1	68.5	76.6	71.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74.2	32.0	72.7	68.8	66.4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75.0	32.8	71.1	60.9	59.4	
초등학교스포츠타강사 배치지원		-	-	-	-	-	
행자부	자원봉사활성화지원	61.7	31.3	60.9	50.8	47.7	
노동 시장 참여형	고용 노동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71.0	43.5	66.1	67.7	64.5
	교육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운영	77.5	45.8	72.5	70.8	65.8
	국토부	글로벌청년리더양성 (해외인턴쉽)	-	-	-	-	-
		항공전문 인력양성	75.0	45.6	73.5	60.3	58.8
	농진청	해외농업기술 개발지원	83.9	50.0	77.4	68.5	55.6
	문화부	박물관진흥지원	74.2	29.0	75.8	60.5	58.1
		예술인력육성	76.7	31.7	60.8	69.2	58.3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지원	73.4	42.7	77.4	71.8	62.9
	산림청	해외산림인턴지원	75.0	25.0	69.4	63.9	63.9
평 균			73.5	38.8	68	62.8	59.5

직무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보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해외농업기술지원사업의 직무만족도는 높은 반면, 해외봉사단의 직무만족도는 낮았다.

소득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해외농업기술지원, 글로벌현장학습,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등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소득수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소득만족도는 낮았다.

근로시간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봉사단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봉사단과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해외봉사단과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사업,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제4절 소 결

1.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가.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예산은 2016년의 경우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중에서 공공업무지원형이 2,67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참여형이 2,081억 원, 사회서비스형은 1,15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인원은 시장참여형이 3만 4,600명, 공공업무지원형이 7,900명, 사회서비스형이 600명 등 총 4만 3,300명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중에서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3만 3,100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업무지원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은 투입 예산규모에 비해 사업 참가자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 취업자 수는 3,746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은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3,723명) 사업 참여 이후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청년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재정효율성 평가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실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의 예산 투입(10억 원) 대비 사업참가자 수, 사업종료 후 취업자 수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이 예산투입당 사업참가자 수, 취업자 수 등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해외산림인력육성, 예술인력육성 사업 등의 재정효율성이 높게 나타나, 재정투입 대비 취업성고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에 공공업무지원형,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참여자 수, 취업자 수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이 주는 시사점

가. 청년층 취업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선택과 집중 필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실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이 예산투입당 사업참가자 수, 취업자 수 등 분야에서 재정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은 예산 10억 원 투입 대비 취업자 수가 가

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투입 대비 취업지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직접일자리 사업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만큼, 예산투입 대비 취업지원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주도의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취업지원 성과분석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등 직접일자리 사업에 재정투입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에 재정투입 대비 취업지원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율 제고 필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고용유지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150일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고용유지기간이 짧아, 고용안정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 취업자 수가 많았던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의 경우 고용유지기간이 평균 100일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의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들을 취업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는 사업 종료 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청년직접일자리 사업 분석에서 평균 취업소요기간을 보면 대부분 100~160일 정도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취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후에 취업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운영개선방안

가.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사업목적에 반영한 평가방식 개선방안

청년 직접일자리 16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분석해보면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서비스형 직접일자리 사업이나,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해외 자원봉사, 문화 활성화, 체육활동 지원 등 고유의 사업목적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로 사회서비스형이나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 실제로 월드프렌즈코리아(WFK) 사업은 해외봉사단 파견 프로그램으로, 봉사에 대한 대가(임금)를 지급하지 않고, 직업이 아닌 봉사활동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개념과는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을 사업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16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에 각각 사업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시장형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로 조건, 고용유지기간 등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사회서비스형·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업목적에 기준으로 별도의 평가지표를 적용하고, 그 중에 일부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해외봉사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사업’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 봉사단 사업에 맞게 해외봉사단 업무에 맞는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그 중 일부 항목으로 인제

양성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4대보험가입 원칙을 적용, 예외조건의 명확한 기준 마련

사회서비스형이나,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는 사업참여자에 대해 4대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4대 보험 적용 제외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외봉사단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며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참여자는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나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3 장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실증분석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심으로

제1절 들어가는 말

본 장의 목적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중심으로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계승·발전시킨 대표적인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으로서 2016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6년의 시범사업으로 6,800여 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참여시켰고, 2017년에 총 5만 명의 참여를 사업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규모는 충분하지만, 시행기간이 짧아 그 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 사업의 전신인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도 보완적으로 수행해서 양 사업의 고용영향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일모아 DB와 고용보험데이터 등의 행정데이터들이다. 이 행정데이터들은 가용 변수들이 적은 한계가 있지만,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가용 변수의 수가 적고 표본의 크기가 작은 특성을 감안해서 여기에서는 회귀분석보다는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기반으로 한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기법을 사용해서 이 사업들

의 고용영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양 기법의 주된 차이점은 회귀분석이 통제변수들을 기본적으로 선형관계에서 통제한다면, 성향점수매칭은 비모수적(non-parametric) 방식으로 통제한다는 점에 있다.

본 장의 나머지 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와 통계모형을 설정하고, 제3절에서는 자료와 기초통계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4절에서 이중차분법 통계분석 결과들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 연구결과들을 요약정리하며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모형 설정

1.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논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발전시킨 후속 사업으로서 사업 취지나 사업모형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기본 정신을 물려받고 있다. 이처럼 양 사업은 모두 미취업 청년의 고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5인 이상)의 청년층(만 15~34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는 많은 부분에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그것을 원용할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양 사업의 고용효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성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기존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사업주를 통해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하나의 제도 변화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6개월 상한의 현금 지원 중심이었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2년에 걸친 적립예금(정부 600만 원, 기업 기여금 300만 원⁶⁾, 근로자 적립금 300만 원 등

6) 인턴제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기여금도 사실상 정부지원금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1,200만 원 적립)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자들을 인턴제뿐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의 수료자들까지 확대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경의 취지는 사업주를 통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인한 사중손실을 줄이고 청년층 근로자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있다(고용노동부, 2017). 중소기업 고용의 경우 중소기업이 청년층을 기피하기보다는 청년층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해서 청년층 근로자에게 더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참여 기업이 누리는 혜택은 청년층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통한 인력부족 해소가 주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보다 참여자의 장기근속 유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근로자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기업들의 참여 동인이 약화될 수 있다. 참여 기업의 차이는 많은 부분 사중손실의 감소를 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소분만큼 그 사업의 고용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나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지원을 받는 고용 규모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것 모두를 고용창출로 보기는 어렵다. 원래 충원될 예정이었던 일자리나 원래 취업하기로 되어 있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중손실을 통제해내는 것이 이들 사업의 고용영향을 평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자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이 사업 참여를 전후한 기업 단위의 고용 규모 변화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사업 참여를 통해서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사업 참여를 전후해서 근로자들의 고용지속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 사업 참여 근로자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해당 일자리에 정착한다면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측면이 있고, 동시에 자칫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고용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영향을 준거로 삼고자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고용영향을 평가한 선행연구들로는 남재량 외(2009), 류장수 외(2012), 김두순 외(2013), 류장수 외(2014), 류장수(2015), 박성익 외(2016) 등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 중 남재량 외(2009)와 류장수 외(2012) 등은 설문조사에 기초한 연구로서 행정데이터를 사용하는 본 연구와 다른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한적으로만 참조하였다.⁷⁾ 나머지 선행연구들 중 류장수(2015)는 류장수 외(2014)를 요약 정리한 글이고, 박성익 외(2016)도 류장수 외(2014)를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박성익 외(2016)와 류장수(2015)를 통해서 류장수 외(2014)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김두순 외(2013)는 중소기업 인턴사업의 고용효과에 대해 산업연관고용효과 분석과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 실태조사 분석 등 다차원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분석은 미시적 고용효과 분석인데, 그것은 다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기업의 고용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로자들의 고용유지기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재취업 확률 등을 분석하고 있다. 위 연구는 이 분석을 위해서 인턴 DB, 워크넷 DB, 고용보험 DB 등 3가지 행정데이터들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분석방법은 매칭방법에 기초한 이중차분법이었다. 분석 결과, 그 사업의 참여가 기업의 고용규모를 2009년에는 1.4명, 2010~2012년 기간 동안에는 0.7명 정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유지율을 1년 기준으로 3.3%, 2년 기준으로 2.1%로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 참여자의 재취업 확률이 미참여자보다 6%p 정도 낮아서 이 사업의 참여가 기업 간 이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류장수 외(2014)도 2009~2012년 기간 동안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에 관한 인적 정보를 담고 있는 청년인턴 DB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하여 사용하였고, 연구방법론으로는 성향점수매칭법에 기반을 두고 콕스의 비례

7) 참고로 남재량 외(2009)에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이 고용창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응답 결과가 보고되었고, 류장수 외(2012)에서는 인턴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율과 고용유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되었다.

위험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분석 결과가 박성익 외(2016)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참여가 실직이나 이직을 통한 일자리를 잃을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류장수 외(2014)는 그 밖에 정규직 전환율,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규모 변동 등에 관한 통계도 제시하고 있는데, 평균 정규직 전환율은 61.4%였고, 이 사업의 참여가 기업의 고용규모에 약하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 연구방법론과 통계모형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들 중에서 김두순 외(2013)의 방법론을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기업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성향점수매칭법(PSM)에 기반한 이중차분법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고용유지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헤저드모형을 주되게 사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헤저드모형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성향매칭법-이중차분법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성향점수매칭법은 비실험적 방법이 사용된 정책의 효과나 치료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통계기법이다. 외적 개입을 의미하는 정책이나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개입이 적용되는 실험 집단이 비교집단과 동일한 조건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비실험적 방법으로는 그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양 집단의 이런 차이를 통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통제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차이점들을 통제하는 회귀분석법이고, 다른 하나는 두 집단의 특성이 동일하도록 비교집단을 표본 추출하는 매칭법이다. 그 중 회귀분석법은 기본적으로 변수 간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형적 관계를 가정하는 한계가 있다면, 매칭법은 선형관계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법에 기초하고 있다. 매칭법의 단점은 실험집단과 유사한 비교집단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편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내생성 문제 등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성향점수매칭법은 후자의 매칭법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칭의 기준으로 성향점수를 사용하고 있다. 성향점수는 종속변수로 사업 참여 여부를 설정하고 독립 변수들로는 그것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포함하는 로짓모형이나 프로빗모형을 추정해서 산출하고 있다. 그 회귀식으로 부터 얻는 사업 참여 확률이 바로 성향점수인데, 이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 사업 참여자에 매칭되는 비참여자들을 1:k(k는 1 이상의 숫자)의 비율로 추출하게 된다. 이때 1:1 비율로 매칭표본을 추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집단의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 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행정데이터들에서 얻을 수 있는 변수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향점수를 추정할 때 업종, 규모, 사업체 소재지, 사업체 구분 등 가용 변수들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추출된 매칭 표본에 대해서 이중차분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영향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중차분법의 기본 원리는 정책효과와 숙성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데 있다. 즉,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참여 전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추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차이 중 일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숙성이거나 양 시점의 상황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양 시점의 차이가 비교집단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참여집단의 참여 전후 차이에서 비교집단의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차이를 빼게 되면 사업 참여의 순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가장 단순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J_{igt} = \alpha_{ig} + \tau_{it} + \delta D_{igt} + \epsilon_{igt}, \quad (1)$$

여기서 J 는 고용규모, D 는 참여 여부($D=1$ 이면 참여), i 는 개별 기업, g 는 참여집단 여부($g=1$ 이면 참여집단), t 는 시점($t=1$ 이면 사업 참여 이후 시점), ϵ 은 오차항으로서 $E(\epsilon_{igt})=0$ 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δ 인데, 이중차분법을 쓰지 않고 OLS로 추정하면 α 가 추가되고, 참여집단에 대해서 참여 전후만 비교하게 되면 τ 가

따라붙게 된다. 이중차분법은 이들 α 와 τ 를 제거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참여집단에 대해서 참여 전후를 비교하면 식 (2)와 같은 참여 전후 간 변화 예측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τ 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교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교를 하게 되면, 식 (3)과 같은 예측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식 (4)에서처럼 이중차분법을 통해 식 (2)에서 식(3)을 빼는 방식으로 δ 값을 추정하게 된다.

$$E(Jg = 1, t = 1) - E(Jg = 1, t = 0) = \tau + \delta \quad (2)$$

$$E(Jg = 0, t = 1) - E(Jg = 0, t = 0) = \tau \quad (3)$$

$$\begin{aligned} [E(Jg = 1, t = 1) - E(Jg = 1, t = 0)] \\ - [E(Jg = 0, t = 1) - E(Jg = 0, t = 0)] = \delta \end{aligned} \quad (4)$$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현황 분석

1. 분석에 사용된 자료

본 장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5~2017년 기간에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들과 기업들 전체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일모아 DB와 고용보험 DB를 결합한 자료이다. 그 중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6년 중반부터의 시범사업에서 시작해서 2017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고용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사업의 경과기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2016년과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자체의 고용성과를 분석하고, 그와 동시에 2015년과 2016년 청년인턴사업 자료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선행연구 결과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성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해보고자 한다.

비참여집단과의 비교 검토를 위해서 중소기업에 종사하면서 이 사업

들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층 근로자들과 사업체 등도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년층 근로자는 고용보험 DB에서 임의 추출 방식으로 해당 연도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 5만 명을 추출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그 중 2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을 사용하였다. 사업체 표본은 2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5만 명을 추출하여 성향점수매칭법의 대상 표본으로 삼았다.

2. 표본의 기본 특성 : 개인 단위

먼저 <표 3-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 참여자들을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비참여자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다. 2015년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모두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반대로 2017년은 청년인턴사업이 폐지된 뒤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유일하게 2016년 자료에서만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이 혼재되어 있다. 2016년 자료를 보면,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이 표본 근로자들의 81.2%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2016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자 수가 적은 이유는 그 해에는 그것이 시범사업이어서 목표물량(1만 명)이 적었지만, 그와 동시에 초기 사업이라 홍보 부족으로 인해 목표물량도 다 채우지 못한 탓이다. 마지막으로, <표 3-1>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참여자 표본의 크기도 정리되어 있는데, 2.3만 명에서 2.5만 명까지 분포되어 있다.

<표 3-1> 표본의 사업유형별 구성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자	청년인턴	35,126(100.0)	29,575(81.2)	-
	청년내일	-	6,867(18.8)	28941(100.0)
	전 체	35,126(100.0)	36,442(100.0)	28941(100.0)
비참여자		23,612	25,611	25,810

<표 3-2>에는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월별 참여 분포를 정리하고 있다. 월별 참여 분포를 보면, 해당 사업이 어떤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게 된다. 동시에 참여 시점이나 참여 기간에 따라서 고용성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이들 사업들의 고용성과를 분석하는 데 이 통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기도 하다.

<표 3-2>에 정리된 통계 결과를 보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인턴사업은 참여 시점이 비교적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다만, 2~4월에 참여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두 해 모두 청년인턴사업의 참여자들이 연초에 더 많이 몰리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들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방식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조기 참여 의지가 상당히 높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2> 사업 참여자들의 월별 참여 분포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1월	198 (0.6)	1,529 (5.2)	44 (0.6)	1,178 (4.1)
2월	3,410 (9.7)	3,293 (11.1)	69 (1.0)	3,717 (12.8)
3월	4,480 (12.8)	4,560 (15.4)	128 (1.9)	3,483 (12.0)
4월	3,697 (10.5)	3,721 (12.6)	213 (3.1)	3,239 (11.2)
5월	2,580 (7.3)	2,665 (9.0)	164 (2.4)	2,636 (9.1)
6월	2,621 (7.5)	2,549 (8.6)	140 (2.0)	3,155 (10.9)
7월	2,586 (7.4)	2,278 (7.7)	340 (5.0)	3,421 (11.8)
8월	2,224 (6.3)	2,219 (7.5)	629 (9.2)	4,225 (14.6)
9월	2,896 (8.2)	1,964 (6.6)	968 (14.1)	3,719 (12.9)
10월	3,228 (9.2)	1,638 (5.5)	1,097 (16.0)	162 (0.6)
11월	3,223 (9.2)	1,543 (5.2)	1,327 (19.3)	2 (0.0)
12월	3,983 (11.3)	1,616 (5.5)	1,748 (25.5)	2 (0.0)
전체	35,126 (100.0)	29,575 (100.0)	6,867 (100.0)	28,939 (100.0)

반면에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후반기에 들어서서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그 사업의 시작 시점이 7월부터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다. 동시에 2016년에는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홍보 부족으로 참여자들이 연말에 몰리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은 연말에 상당히 쫓기듯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점은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과에 일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7월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그 이전의 참여자들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이 7월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2017년 월별 참여 분포를 보면, 2~9월까지 골고루 분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2017년 목표 참여자 수가 5만 명인데, 9월 말까지 3만 명도 모집하지 못하고 있어서 목표량을 채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은 우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사업과 달리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서 기업들에는 참여할 동인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태이다.

<표 3-3>에는 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인적 특성들에 관한 기초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항목들로는 참여자들의 경우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이고, 비참여자들은 성별과 연령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먼저 사업 참여자들의 인적 특성들을 보면, 참여자들 중 여성의 비율은 34~37%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 비율은 2017년에 약간 올라가고 있으나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사이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도 25세 전후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양 사업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력별 구성⁸⁾을 보면, 대졸자가 48~52% 사이의 분포를

8) 표본 참여자들 중에는 졸업예정자나 재학생들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도 해당 학력의 졸업 예정을 전제로 해서 취업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학력수준의 졸업자로 취급하였다.

보이고 있으며, 고졸과 전문대졸 출신들이 20%대 초반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중졸 이하는 극히 소수만 존재하고, 대학원 졸업자도 극히 일부만 존재하고 있다. 학력별 구성도 양 사업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참여자들의 인적 특성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45%이고 평균 연령은 26세 전후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 표본에 비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10%p 정도 더 높고, 평균 연령은 한 살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4>에는 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정리하고 있다(비참여자들의 지역별 분포는 <부표 3-1>에 정리되어 있음). 여기서 지역은 표본 근로자들이 이 사업들에 참여한 지역을 의미한다. 그 통계들을 보면, 서울 지역이 28~33%의 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지역이 20~2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인천지역의 3~4%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지역이 55% 정도의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부산지역과 경북지역, 경남지역 등이 5~7% 정도를 보이고 있고, 대구지역이 3~4%를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들을 합하면, 영남지역이 20%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대전지역이나 광주지역, 충남북지역, 전남북지역 등은 2% 정도로 낮은 비율들을 보이고 있어서 충청지역이나 호남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3> 사업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N=35126)	청년인턴 (N=29575)	청년내일 (N=6867)	청년내일 (N=28941)
참여자	여성	0.35 (0.48)	0.34 (0.47)	0.34 (0.47)	0.37 (0.48)
	연령	24.64 (3.50)	24.96 (3.43)	24.55 (3.90)	25.39 (3.61)
	중졸 이하	0.00 (0.06)	0.00 (0.05)	0.00 (0.04)	0.00 (0.05)
	고졸	0.24 (0.43)	0.21 (0.41)	0.26 (0.44)	0.22 (0.41)
	전문대졸	0.24 (0.43)	0.23 (0.42)	0.23 (0.42)	0.24 (0.43)
	대졸	0.49 (0.50)	0.52 (0.50)	0.48 (0.50)	0.51 (0.50)
	대학원졸	0.03 (0.16)	0.03 (0.17)	0.02 (0.15)	0.02 (0.15)
비참여 여자		N=23,612	N=25,611		N=25,810
	여성	0.45 (0.50)	0.45 (0.50)		0.45 (0.50)
	연령	26.28 (4.42)	25.96 (4.45)		25.91 (4.43)

마지막으로 양 사업 사이에 지역별 분포상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견된다. 우선 서울지역과 경북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제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음에 반해서 경기지역과 부산지역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부산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더해 추가적인 적립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참여자들이 2년을 넘어서서 1년 더 근무하게 되면 부산시가 90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사업에의 참여 동기를 확대 강화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부산시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표 3-4〉 사업 참여자들의 지역별 구성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서울	11,710(33.3)	9,261(31.3)	1,977(28.8)	8,040(27.8)
부산	2,006(5.7)	1,723(5.8)	486(7.1)	1,887(6.5)
대구	1,337(3.8)	1,280(4.3)	244(3.6)	1,069(3.7)
인천	1,217(3.5)	897(3.0)	186(2.7)	1,137(3.9)
광주	641(1.8)	564(1.9)	212(3.1)	785(2.7)
대전	1,112(3.2)	808(2.7)	141(2.1)	679(2.4)
울산	270(0.8)	418(1.4)	129(1.9)	411(1.4)
강원	313(0.9)	261(0.9)	71(1.0)	354(1.2)
경기	7,266(20.7)	6,271(21.2)	1,632(23.8)	6,620(22.9)
충북	667(1.9)	742(2.5)	167(2.4)	1,057(3.7)
충남	1,081(3.1)	933(3.2)	202(2.9)	996(3.4)
경북	2,381(6.8)	2,009(6.8)	336(4.9)	1,627(5.6)
경남	1,798(5.1)	1,506(5.1)	301(4.4)	1,359(4.7)
전남	640(1.8)	429(1.5)	201(2.9)	583(2.0)
전북	850(2.4)	788(2.7)	110(1.6)	741(2.6)
제주	105(0.3)	102(0.3)	4(0.1)	34(0.1)
세종	46(0.1)	44(0.2)	5(0.1)	53(0.2)
지역무관	1,682(4.8)	1,539(5.2)	462(6.7)	1507(5.2)
전 체	35,122(100.0)	29,575(100.0)	6,866(100.0)	28,939(100.0)

<표 3-5>에는 표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별 분포가 정리되어 있다. 산업분류는 대분류이다(비참여자들의 산업별 분포는 <부표 3-2>에 정리되어 있음). 이 수치들은 기업 단위의 통계가 아니고, 각 근로자에게 산업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각 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중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통계들을 보면, 제조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비중이 41~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사이에 제조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비중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인데 이들은 15% 전후를 보이고 있다.

<표 3-5> 사업 참여자들의 산업별 구성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농림어업	189(0.5)	155(0.5)	55(0.8)	141(0.5)
광업	5(0.0)	-	-	6(0.0)
제조업	14,528(41.4)	13,244(44.8)	3,040(44.3)	12,615(43.6)
전기/가스/중기/수도	10(0.0)	11(0.0)	1(0.0)	8(0.0)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42(0.1)	46(0.2)	9(0.1)	57(0.2)
건설업	8(0.0)	4(0.0)	-	9(0.0)
도소매업	4,410(12.6)	3,659(12.4)	802(11.7)	3,776(13.1)
운수업	745(2.1)	542(1.8)	141(2.1)	594(2.1)
숙박/음식업	130(0.4)	86(0.3)	17(0.3)	104(0.4)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5,998(17.1)	4,763(16.1)	912(13.3)	3,863(13.4)
금융보험업	368(1.1)	373(1.3)	75(1.1)	292(1.0)
부동산업/임대업	149(0.4)	119(0.4)	26(0.4)	67(0.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639(16.1)	4,325(14.6)	1,185(17.3)	4,754(16.4)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1,340(3.8)	943(3.2)	305(4.4)	920(3.2)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6(0.0)	3(0.0)	-	1(0.0)
교육서비스업	219(0.6)	166(0.6)	55(0.8)	205(0.7)
보건업/사회복지	287(0.8)	231(0.8)	14(0.2)	936(3.2)
예술/스포츠/여가관련	212(0.6)	149(0.5)	24(0.4)	81(0.3)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841(2.4)	756(2.6)	206(3.0)	512(1.8)
전 체	35,126(100.0)	29,575(100.0)	6,867(100.0)	28,941(100.0)

이들 산업은 임금이 비교적 높은 분야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반드시 저임금 업종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 뒤를 이어서 도소매업이 12~13%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정도이고, 나머지 산업들은 아주 낮은 참여 비율들을 보이고 있다.

<표 3-6>에는 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한 통계가 정리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임금에 관한 통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참여 시 기업들의 약정 임금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어 있는 초임금 수준이다. 비참여자들의 경우,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어 있는 초임금 수준에 관한 정보만 정리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두 가지 임금 수준을 비교해보면, 고용보험 DB의 초임이 약정 임금보다 15만~17만 원 정도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에서 발견되는 것은 청년 인턴사업 참여자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사이에 임금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이면에는 적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약정 임금이나 초임 모두 법정 최저 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주도록 임금수준을 설정한 의도는 이 사업에의 참여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줄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데 있는데, 기존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현저하게 높다고 한다면 법정 최저임금이 그런 규제 장치로 사용될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참여 기업의 자격 요건에 기업 규모만 주되게 반영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참여자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참여자들의 임금보다 10만~20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 참여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기 위해서 최저임금 대비 사업자들의 임금 수준에 관한 통계를 <표 3-7>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법정 최저임금과의 배율을 산정하는 데 약정 임금을 사용하였다. 이 약정 임금 통계에서 지나치게 높은 임금들은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서 월급여가 1,000만 원을 넘는 경우나 100만 원 미만인 경우 등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표 3-6〉 사업 참여자들의 임금 수준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참여자	약정임금	N	35,088	29,529	6,862	28,867
		M	1,497,012 (265,877)	1,561,593 (244,815)	1,548,749 (240,432)	1,700,390 (297,239)
	초임 (고용보험DB)	N	34,118	28,857	6,552	27,390
		M	1,656,853 (380,672)	1,740,602 (395,924)	1,729,859 (401,124)	1,854,583 (412,764)
비참여자	초임 (고용보험DB)	N	23,612	25,611		25,810
		M	1,843,475 (1,136,723)	1,890,524 (1,065,842)		1,954,880 (1,065,207)

2015년까지는 임금수준을 최저임금의 110% 이상으로 맞추도록 하는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고 최저임금의 110%보다 낮은 기업의 비율이 17.6%만큼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주는 기업의 비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최저임금의 110% 미만을 받는 참여자가 일부 존재하고 있지만, 통계적 오류이거나 약간의 예외적인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높은 임금을 받는 참여자들이 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반대쪽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최저임금의 175%를 받는 참여자의 비율도 2~4% 정도 되고, 최

〈표 3-7〉 사업 참여자들의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 약정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최저임금의 배율(평균)				
W < 최저임금	-	5 (0.0)	18 (0.3)	33 (0.1)
100% ≤ W < 110%	6,178 (17.6)	-	5 (0.1)	263 (0.9)
110% ≤ W < 125%	13,422 (38.3)	20,005 (67.8)	4,790 (69.8)	17,884 (62.0)
125% ≤ W < 150%	10,282 (29.3)	6,442 (21.8)	1,363 (19.9)	7,478 (25.9)
150% ≤ W < 175%	3,769 (10.7)	2,346 (7.9)	518 (7.6)	2,169 (7.5)
175% ≤ W < 200%	55 (2.4)	482 (1.6)	119 (1.7)	714 (2.5)
최저임금 200% 이상	582 (1.7)	249 (0.8)	49 (0.7)	326 (1.1)
전 체	35,088 (100.0)	29,529 (100.0)	6,862 (100.0)	28,867 (100.0)

저임금의 150% 이상을 받는 참여자의 비율도 10% 정도는 되고 있다. 이 사업의 참여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임금을 줄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처럼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단지 기업 규모만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직종이나 산업 등도 자격요건에 포함하든가, 아니면 업종별 쿼터 등을 사용해서 고임금 직종의 참여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4절 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결과

1. 개인 단위 분석결과

먼저 <표 3-8>에 사업 참여자들의 진행 상황에 관한 통계를 정리하였다. 진행 상황 변수들로는 선발 취소, 선발, 중도탈락, 수료, 조기 채용, 수료 후 취업, 정규직 전환 후 탈락 등이다. 그 중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중도탈락 비율을 보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인턴사업은 약 11% 정도를 보이고 있음에 반해서 2017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는 4.9%로 낮아지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선발만 진행한 참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하고 중도탈락률을 잡으면 6.3% 정도로 약간 오르긴 하지만, 여전히 2015~16년의 청년인턴사업보다는 많이 낮다. 다른 측면에서 수료 후 취업이나 조기 채용 등의 성과를 보면, 2017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선발만 되어 있는 참여자들을 제외한 경우)이 2015년과 2016년의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에는 청년내일채움사업의 중도탈락률도 11.4%를 보이고 취업 성과(조기 채용과 수료 후 취업)도 78.4%로서 2017년보다는 많이 낮은데, 이때는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유지 효과가 청년인턴사업보다는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에는 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 구간별

〈표 3-8〉 사업 참여자들의 진행 상황

최저임금 기준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1)	(2)a	
선발취소	1,589(4.5)	1,238(4.2)	245(3.6)	480(1.7)	480(2.1)	
선발	19(0.1)	108(0.4)	13(0.2)	6,192(21.4)	-	
중도탈락	4,059(11.6)	3,409(11.5)	783(11.4)	1,421(4.9)	1,421(6.3)	
수료	2,227(6.3)	2,271(7.7)	373(5.4)	633(2.2)	633(2.8)	
조기 채용	1,141(3.3)	1,261(4.3)	108(1.6)	358(1.2)	358(1.6)	
수료 후 취업	26,091(74.3)	21,268(71.9)	5,275(76.8)	19,498(67.4)	19,498(85.7)	
정규직 전환 후 탈락	-	20(0.1)	70(1.0)	359(1.2)	359(1.6)	
전 체	35,126(100.0)	29,575(100.0)	6,867(100.0)	28,941(100.0)	22,749(100)	

주: 선발만 되어 있는 상태의 참여자들을 제외하고 통계를 산출하였음.

분포를 정리하고 있다. 구간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 반, 2년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2015년과 2016년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구간별 분포를 보면 양자 사이에는 상당히 일관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 3개월까지는 87%의 고용유지 비율을 보이다가 6개월 전까지는 70~72%, 9개월 전까지는 62~64%를 보인 후 1년 전까지는 56~57%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 다음 1.5년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참여자의 비율은 다시 42~43%로 떨어지고, 2015년 자료에서만 확인되고 있는 2년까지의 유지 비율은 3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인턴사업이 추진되었던 2015년에 이 사업 비참여자들의 기간별 고용유지비율을 보면, 3개월 유지비율은 76%, 6개월 유지비율은 61%, 9개월 유지비율은 52%, 1년 유지비율은 46%, 1.5년 유지비율은 33%, 2년 이상 유지비율은 26%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약간 더 낮은 비율들을 보이고 있다.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와 비참여자 고용유지비율을 비교해보면,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1년까지는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지만, 1년이 넘어서면 어느 쪽의 고용유지비율이 더 높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구간별 고용유지 성과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나 비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편이다. 2016년 청년내일채움사업 참여자들의 통계를 보면, 3개월 고용유지까지는 청

년인턴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다가 6개월 고용유지부터 격차를 벌리기 시작해서 9개월, 12개월, 1년 반 시점에는 상당한 격차를 벌리고 있다.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구간별 고용유지 비율이 확인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2016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자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는 특징적이게도 시간이 가도 아주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근로자들에게 누적되는 적립금이 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그것의 실현 날짜도 가까워져서 이탈의 심리적 비용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서 청년인턴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비율이 높으며,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비율이 가장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표 3-9>에는 인턴 기간도 정리되어 있다. 그 평균값이 2015~16년에는 2.2~2.3개월 정도를 보이다가 2017년에는 인턴의무기간이 짧아지면서 0.9개월로 대폭 줄어들고 있다.

<표 3-9> 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별 분포 비교

A. 사업 참여자

	2015년		2016년				2017년	
	청년인턴		청년인턴		청년내일		청년내일	
	N	M	N	M	N	M	N	M
인턴기간	34195	0.87 (0.33)	28892	0.87 (0.34)	6578	0.87 (0.33)	19925	0.88 (0.33)
고용 3월 이상 유지	34195	0.72 (0.45)	28892	0.70 (0.46)	6578	0.74 (0.44)	11056	0.78 (0.42)
고용 6월 이상 유지	34195	0.64 (0.48)	28892	0.62 (0.48)	6578	0.66 (0.47)	1176	0.76 (0.43)
고용 9월 이상 유지	34195	0.57 (0.49)	25828	0.56 (0.50)	3693	0.64 (0.48)	1178	0.76 (0.43)
고용 1년 이상 유지	34195	0.42 (0.49)	12823	0.43 (0.50)	439	0.74 (0.44)	-	-
고용 1.5년 이상 유지	27230	0.33 (0.47)	13102	0.44 (0.50)	454	0.75 (0.43)	-	-
고용 2년 이상 유지	27918	0.35 (0.48)	-	-	-	-	-	-

B. 사업 비참여자

	2015년		2016년		2017년	
	N	M	N	M	N	M
고용 3월 이상 유지	23612	0.76 (0.43)	25611	0.72 (0.45)	18681	0.71 (0.46)
고용 6월 이상 유지	23612	0.61 (0.49)	25611	0.57 (0.50)	11634	0.57 (0.49)
고용 9월 이상 유지	23612	0.52 (0.50)	25611	0.48 (0.50)	3186	0.47 (0.50)
고용 1년 이상 유지	23612	0.46 (0.50)	21691	0.42 (0.49)	-	
고용 1.5년 이상 유지	23612	0.33 (0.47)	9656	0.32 (0.47)	-	
고용 2년 이상 유지	20034	0.26 (0.44)	-		-	

이상의 고용유지 성과를 조금 더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비참여자 대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 이탈 가능성에 대한 콕스 해저드모형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3-10>에 정리되어 있다. 회귀모형은 2016년 참여자와 2017년 참여자로 구분해서 추정하였다. 2016년의 경우 청년인턴사업 참여 근로자들은 표본에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들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에 대한 추정계수들이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근로자들의 고용이탈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춰주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긍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3-10>의 회귀분석 결과는 통제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도 보고하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로 여성(-), 연령(-), 기업규모(+), 대전지역(-), 강원지역(-), 전기/가스/증기/수도(-),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0〉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2016년(N=31,596)	2017년(N=49,946)
청년내일	-0.572*** (0.025)	-0.817*** (0.022)
약정 임금(백만 원)	-0.272*** (0.013)	-0.409*** (0.016)
여성	-0.154*** (0.016)	-0.150*** (0.018)
연령	-0.025*** (0.002)	-0.014*** (0.002)
기업규모	0.001*** (0.000)	0.002*** (0.000)
서울	0.023 (0.077)	-0.002*** (0.068)
부산	0.016 (0.087)	-0.185** (0.081)
대구	-0.216** (0.095)	-0.134 (0.086)
인천	-0.061 (0.084)	-0.106 (0.077)
광주	0.150 (0.110)	-0.240** (0.098)
대전	-0.284*** (0.104)	-0.363*** (0.104)
울산	0.128 (0.112)	-0.021 (0.111)
강원	-0.233** (0.110)	-0.295*** (0.111)
경기	-0.003 (0.077)	-0.170** (0.068)
충북	0.097 (0.096)	-0.228** (0.093)
충남	0.131 (0.090)	-0.229** (0.091)
경북	0.102 (0.089)	-0.112 (0.083)
경남	-0.113 (0.087)	0.326*** (0.075)
전남	0.009 (0.102)	-0.211** (0.103)
전북	0.126 (0.105)	0.068 (0.094)
제주	-0.221 (0.300)	-0.713* (0.414)
농림어업	0.723* (0.427)	-1.008*** (0.353)
제조업	-0.126 (0.231)	-0.429*** (0.166)
전기/가스/증기/수도	-0.589* (0.318)	-1.131*** (0.306)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0.747** (0.347)	-0.829** (0.372)
건설업	0.091 (0.238)	0.280 (0.174)
도소매업	-0.042 (0.232)	-0.461*** (0.167)
운수업	-0.406* (0.238)	-0.558*** (0.175)
숙박/음식업	0.271 (0.234)	-0.272 (0.17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124 (0.232)	-0.842*** (0.168)
금융보험업	-0.572** (0.235)	-1.197*** (0.181)
부동산업/임대업	-0.126 (0.245)	-0.344* (0.19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176 (0.233)	-0.621*** (0.168)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0.356 (0.232)	-0.352** (0.168)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0.238 (0.284)	-1.553*** (0.344)
교육서비스업	0.139 (0.238)	-0.167 (0.176)
보건업/사회복지	-0.023 (0.232)	-0.698*** (0.169)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454* (0.235)	-0.101 (0.176)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0.033 (0.234)	-0.844 (0.177)
Log-L	-189,724.7	-143,913.6

주 : * p<0.10, ** p<0.05 *** p<0.01

<표 3-11>에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과 비참여자들을 비교한 헤저드모형 추정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2016년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추정계수도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이 더 낮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도 긍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표 3-11>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헤저드모형 분석

	2015년(N=53,316)	2016년(N=50,894)
청년인턴	-0.376*** (0.012)	-0.386*** (0.014)
약정 임금(백만 원)	-0.290*** (0.011)	-0.329*** (0.012)
여성	-0.046*** (0.011)	-0.136*** (0.013)
연령	-0.016*** (0.001)	-0.017*** (0.002)
기업규모	0.000 (0.000)	0.001*** (0.000)
서울	0.062* (0.033)	0.013 (0.038)
부산	0.069* (0.041)	-0.055 (0.048)
대구	0.008 (0.045)	-0.158*** (0.052)
인천	0.153*** (0.041)	0.013 (0.048)
광주	0.085 (0.057)	0.040 (0.064)
대전	-0.055 (0.047)	-0.262*** (0.059)
울산	-0.019 (0.064)	0.170** (0.068)
강원	0.043 (0.064)	-0.106 (0.072)
경기	0.049 (0.034)	-0.031 (0.039)
충북	0.042 (0.053)	-0.062 (0.060)
충남	0.083* (0.047)	-0.052 (0.054)
경북	0.091** (0.042)	-0.057 (0.048)
경남	0.051 (0.042)	-0.048 (0.049)
전남	0.223*** (0.055)	0.034 (0.065)
전북	-0.049 (0.054)	0.145** (0.056)
제주	0.136 (0.118)	-0.250* (0.138)
농림어업	-0.603 (0.513)	0.435 (0.381)
제조업	-0.118 (0.114)	-0.223* (0.134)
전기/가스/중기/수도	-0.373 (0.187)	-0.560** (0.235)

〈표 3-11〉의 계속

	2015년(N=53,316)	2016년(N=50,894)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0.090 (0.191)	-0.520** (0.216)
건설업	0.119 (0.124)	-0.059 (0.146)
도소매업	-0.034 (0.115)	-0.144 (0.135)
운수업	-0.194 (0.119)	-0.477*** (0.141)
숙박/음식업	0.317*** (0.119)	0.116 (0.13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295** (0.115)	-0.359*** (0.135)
금융보험업	-0.558*** (0.122)	-0.644*** (0.140)
부동산업/임대업	0.082 (0.130)	-0.135 (0.15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155 (0.115)	-0.265* (0.135)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0.220* (0.116)	0.197 (0.13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0.149 (0.180)	-0.437** (0.209)
교육서비스업	-0.048 (0.125)	0.060 (0.144)
보건업/사회복지	-0.253** (0.117)	-0.172 (0.13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057 (0.122)	0.355** (0.140)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0.039 (0.118)	-0.175 (0.138)
Log-L	-399,442.6	-313,125.1

주: * p<0.10, ** p<0.05 *** p<0.01

마지막으로,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간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2016년에만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이직률 비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해는 2016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모형의 세팅을 위해서 2015년과 2017년 데이터에 대해서도 헤저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2016년 자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 이탈 가능성이 청년인턴사업보다 $\alpha=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보고하고 있지는 않지만, 3개년도 데이터를 풀링해서 분석해보아도, 내일공제사업의 더미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청년인턴사업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근로자들의 고용이탈 가능성을 낮춰주고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고용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 밖의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 결과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 참여 시점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보았는데, 주로 2016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을 일부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8월, 9월, 12월 참여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더 높는데, 8~9월은 이 사업의 초기였던 점, 12월은 물량에 쫓겨 급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017년의 경우에는 11월과 12월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연말 효과를 볼 수 없어서 2015년의 연말 효과만을 보면 11월이나 12월 참여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참여 시점 효과는 2016년에 한정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약정 임금과 기업 규모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참여자들의 이탈 가능성을 낮춰주고 있다. 이것은 참여자들의 경제적 타산성에 비추어서 모두 이론적 예측 방향과 동일하다. 인적 특성 변수들도 고용이탈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2016년과 2017년에 이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고, 연령은 2015년에는 이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는데 201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학력변수들은 2015년과 2016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데, 학력이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 지역과 업종 변수들도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치들을 보이고 있지만, 연도 사이에 일관되지 않아서 그 결과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사업 참여자들의 이직확률에 관한 콕스 해저드모형 분석

	2015년(N=30,236)	2016년(N=32,004)	2017년(N=26,333)
청년내일채움공제(더미)	-	-0.284*** (0.025)	-
2월 참여	-0.045 (0.094)	-0.037 (0.043)	0.123* (0.071)
3월 참여	-0.030 (0.093)	0.049 (0.041)	0.076 (0.072)
4월 참여	-0.019 (0.094)	0.034 (0.043)	0.084 (0.074)
5월 참여	-0.015 (0.095)	0.076* (0.045)	0.141* (0.078)
6월 참여	0.018 (0.095)	0.016 (0.046)	0.081 (0.077)
7월 참여	0.055 (0.095)	0.039 (0.047)	-0.038 (0.080)
8월 참여	0.041 (0.095)	0.152*** (0.047)	-0.307*** (0.091)
9월 참여	0.033 (0.094)	0.087* (0.047)	-0.274** (0.107)

〈표 3-12〉의 계속

	2015년(N=30,236)	2016년(N=32,004)	2017년(N=26,333)
10월 참여	-0.079 (0.094)	0.061 (0.049)	0.604 (0.415)
11월 참여	0.063 (0.094)	0.063 (0.050)	-
12월 참여	-0.044 (0.094)	0.082* (0.049)	-
약정 임금(백만 원)	-0.300*** (0.030)	-0.428*** (0.039)	-0.856*** (0.069)
여성	0.009 (0.016)	-0.082*** (0.018)	-0.169*** (0.035)
연령	-0.009*** (0.002)	-0.002 (0.002)	0.018*** (0.004)
고졸	-0.031 (0.122)	-0.315** (0.138)	-0.153 (0.255)
전문대졸	-0.209* (0.122)	-0.443*** (0.138)	-0.277 (0.255)
대졸	-0.288** (0.121)	-0.537*** (0.137)	-0.405 (0.255)
대학원졸	-0.358*** (0.130)	-0.741*** (0.148)	-0.357 (0.278)
기업규모	-0.002*** (0.000)	-0.001*** (0.000)	0.000 (0.000)
서울	0.084** (0.036)	0.007 (0.038)	0.054 (0.076)
부산	0.117** (0.044)	0.034 (0.049)	-0.036 (0.091)
대구	-0.017 (0.049)	-0.148*** (0.054)	-0.011 (0.103)
인천	0.024 (0.050)	0.086 (0.056)	-0.302*** (0.116)
광주	0.099 (0.062)	-0.060 (0.064)	-0.101 (0.113)
대전	-0.009 (0.052)	-0.201*** (0.063)	-0.080 (0.126)
울산	0.015 (0.085)	0.316*** (0.070)	0.152 (0.127)
강원	0.162** (0.080)	-0.071 (0.092)	-0.323* (0.170)
경기	0.019 (0.037)	-0.076* (0.040)	-0.151* (0.079)
충북	0.060 (0.063)	-0.071 (0.067)	-0.224** (0.114)
충남	-0.024 (0.055)	-0.268*** (0.064)	-0.377*** (0.124)
경북	0.066 (0.046)	-0.138*** (0.051)	-0.029 (0.096)
경남	0.078 (0.048)	0.041 (0.052)	0.011 (0.098)
전남	0.238*** (0.059)	0.224*** (0.064)	0.081 (0.120)
전북	-0.117** (0.059)	0.042 (0.060)	0.140 (0.113)
제주	0.199 (0.126)	-0.207 (0.148)	-0.693 (0.582)
세종	0.034 (0.196)	0.044 (0.204)	-0.711 (0.505)
농림어업	0.386 (0.591)	0.226 (0.143)	9.545 (75.796)
제조업	0.144 (0.578)	0.051 (0.049)	9.132 (75.796)
전기/가스/증기/수도	-0.275 (0.708)	0.074 (0.412)	8.553 (75.803)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0.401 (0.606)	0.150 (0.195)	8.970 (75.797)
건설업	0.558 (0.732)	0.131 (1.002)	8.558 (75.803)
도소매업	0.125 (0.579)	0.073 (0.052)	9.077 (75.796)
운수업	0.092 (0.580)	-0.161** (0.078)	9.126 (75.796)
숙박/음식업	0.570 (0.587)	0.406*** (0.137)	9.276 (75.796)

〈표 3-12〉의 계속

	2015년(N=30,236)	2016년(N=32,004)	2017년(N=26,33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071 (0.579)	-0.135** (0.053)	8.823(75.796)
금융보험업	-0.005 (0.584)	-0.051 (0.090)	8.921(75.796)
부동산업/임대업	0.089 (0.587)	0.284** (0.118)	9.870(75.79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117 (0.579)	0.009 (0.052)	8.972(75.796)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0.190 (0.579)	0.134** (0.064)	9.147(75.79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0.393 (0.731)	0.120 (0.709)	10.432(75.803)
교육서비스업	0.298 (0.584)	0.385*** (0.102)	9.103(75.796)
보건업/사회복지	0.143 (0.584)	0.114 (0.106)	8.155(75.79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345 (0.584)	0.310*** (0.110)	8.917(75.797)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0.169 (0.580)	-	9.006(75.796)
Log-L	-198,485.0	-156,355.4	-41,833.6

주: * p<0.10, ** p<0.05 *** p<0.01

2. 기업 단위 분석결과

가. 사업 참여 기업 현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는 청년인턴사업과 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이 채용된 기업에 대한 정보들이 일부 들어 있어서 그 자료를 기업 단위로 재정리하여 몇 가지 통계를 작성하였다.

먼저 <표 3-13>에는 참여 기업들이 이 사업들을 이용해서 고용한 근로자 수에 관한 통계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2015년의 경우 청년인턴사업을 통해서 평균 2.3명 정도를 채용하였다. 2016년에는 청년인턴사업을 통해서 2.3명,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서 2.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 수에 대해서 기업별 평균값을 구하면 2.5명 정도이다. 한편 2017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서 기업별로 평균 2.1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이들 사업을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 수가 2.0~2.5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 3-13〉 참여 기업들의 사업 활용 정도

	2015년		2016년		2017년	
	N	M(SD)	N	M(SD)	N	M(SD)
청년인턴 규모	15,358	2.29 (3.40)	12,677	2.33 (3.60)	-	-
청년내일 규모	-	-	3,402	2.02 (2.99)	14,152	2.05 (3.41)
전체 규모	15,358	2.29 (3.40)	14,903	2.45 (3.80)	14,152	2.05 (3.41)

2016년에는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각 사업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구성비율에 관한 통계들을 <표 3-14>에 정리하여 보았다. 여기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먼저 평균값을 보면, 그 두 개의 사업으로 참여한 근로자들 중 약 19%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서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가 없고 청년인턴사업만으로 채용 기업의 비율이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청년인턴사업 참여자가 없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만으로 채용 기업의 비율은 14.9%로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양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한 기업의 비율이 8%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4〉 참여 기업들의 청년인턴사업 대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근로자 비율 : 구간별 분포

	평균/빈도(%)
평균	0.19 (0.37)
내일 채용 비율 = 0%	11,501 (77.2)
0% < 내일 채용 비율 < 25%	97 (0.7)
25% ≤ 내일 채용 비율 < 50%	322 (2.2)
50% ≤ 내일 채용 비율 < 75%	651 (4.4)
75% ≤ 내일 채용 비율 < 100%	106 (0.7)
내일 채용 비율 = 100%	2,226 (14.9)
전체	14,903 (100.0)

〈표 3-15〉 참여 기업의 재참여 비율 : 2015년 대 2016년 대 2017년

	차년도 참여 여부		
	비참여	참여	전체
2015년 참여 기업	11,288(73.5%)	4,070(26.5%)	15,358(100.0%)
2016년 참여 기업	10,455(100.0%)	0(0.0%)	10,455(100.0%)

〈표 3-15〉에는 이 사업들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그 다음해에 참여하는 비율을 정리하여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 2015년에 참여했던 기업 중 2016년에 참여한 기업의 비율은 26.5%이고, 2016년에 참여했던 기업 중 2017년에 참여한 기업의 비율은 0%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청년인턴사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인센티브 구조가 기업에서 근로자로 바뀌으로써 계속참여 비율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런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기업들은 청년인턴사업 참여 기업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기업들이 아닌가 추측된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 사업체 단위 분석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는 기업의 근로자 수 변화를 통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노동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사업체 단위로 그 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참여한 사업체에 대해 전년도 말 근로자 수 대비 당해연도 말 근로자 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그 사업에의 참여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들을 추정하여 보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가 〈표 3-16〉에 정리되어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 결과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이 기업의 고용 규모를 늘려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16〉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15년 (N=74,205)	2016년 (N=78,169)	2017년 (N=81,954)
상수	6.298 (1.806)	6.479 (1.715)	10.447 (1.598)
청년인턴 참여	5.348*** (0.314)	4.472*** (0.333)	-
청년내일 참여	-	1.759*** (0.652)	5.244*** (0.268)
기업규모	-0.083*** (0.002)	-0.085*** (0.002)	-0.086*** (0.002)
서울	-2.636** (1.273)	-0.859 (1.203)	-1.873* (1.087)
경기	-2.575** (1.270)	-0.969 (1.200)	-1.274 (1.085)
강원	-2.280* (1.362)	-2.717** (1.291)	-2.479** (1.172)
충북	-3.550*** (1.328)	-1.777 (1.257)	-1.566 (1.137)
충남	-2.875** (1.313)	-0.572 (1.242)	0.200 (1.123)
경북	-4.363*** (1.304)	-2.725** (1.234)	-1.580 (1.116)
경남	-3.798*** (1.296)	-2.917** (1.225)	-2.851** (1.108)
전북	-4.099*** (1.340)	-3.579*** (1.269)	-1.908* (1.148)
전남	-4.349*** (1.335)	-3.016** (1.264)	-1.223 (1.144)
제주	-3.418** (1.481)	-1.406 (1.405)	-0.732 (1.279)
부산	-3.118** (1.299)	-2.497** (1.229)	-2.368** (1.112)
대구	-3.167** (1.319)	-1.516 (1.249)	-2.642** (1.130)
광주	-2.921** (1.367)	-0.955 (1.294)	-1.657 (1.170)
대전	-3.125** (1.363)	-0.885 (1.290)	-2.018* (1.168)
인천	-3.301** (1.309)	-1.255 (1.238)	-1.431 (1.120)
울산	-3.433** (1.359)	-3.285** (1.285)	-3.712*** (1.162)
농림어업	7.481*** (2.543)	2.302 (2.440)	0.474 (2.257)
제조업	5.454*** (1.303)	3.517*** (1.243)	-0.806 (1.188)
전기/가스/증기/수도	6.319*** (1.738)	5.883*** (1.659)	0.853 (1.552)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3.871** (1.526)	2.486* (1.463)	-0.862 (1.387)
건설업	7.846*** (1.339)	6.840*** (1.279)	3.123** (1.221)
도소매업	8.102*** (1.328)	6.091*** (1.267)	0.844 (1.210)
운수업	4.447*** (1.338)	3.301*** (1.277)	-1.280 (1.219)
숙박/음식업	5.105*** (1.430)	3.849*** (1.355)	-7.332*** (1.27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8.547*** (1.353)	6.739*** (1.291)	2.520** (1.230)
금융보험업	5.445*** (1.383)	3.999*** (1.323)	-0.207 (1.262)
부동산업/임대업	3.505** (1.438)	3.371** (1.368)	-0.456 (1.29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8.258*** (1.339)	6.454*** (1.278)	2.711** (1.219)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7.594*** (1.344)	5.582*** (1.282)	2.673** (1.221)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5.125*** (1.455)	1.175 (1.391)	10.709*** (1.340)
교육서비스업	1.287 (1.330)	-1.457 (1.271)	1.388 (1.215)
보건업/사회복지	8.064*** (1.312)	6.085*** (1.251)	4.000*** (1.196)
예술/스포츠/여가관련	4.216** (1.498)	4.234*** (1.430)	2.194 (1.352)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6.230*** (1.377)	4.247*** (1.314)	0.939 (1.250)
R ²	0.043	0.046	0.057

주 : * p<0.10, ** p<0.05 *** p<0.01

그와 동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기업의 근로자 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서 기업단위로 측정된 근로자 수 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표 3-17>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근로자 수 변화율은 신청 시 근로자 수 대비 현 시점 근로자 수의 비율에 로그값을 취하여 산출하였다. 주된 독립변수들은 이 두 사업들을 통해서 채용한 전체 근로자 수 중 청년내일채움사업을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 수의 비중(청년내일채움 참여자 비중)과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 중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 수 비율(전체 근로자 수 대비 두 사업 참여자 비율) 등 2가지이다. 전자는 청년인턴사업 대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를, 후자는 그 두 가지 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독립변수들이다.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비율의 추정치는 2016년 자료와 풀링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두 모형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치들을 보이고 있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고용효과가 더 양호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어서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두 사업 참여자 비율 변수의 추정치는 2015~2017년 데이터와 풀링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 모형들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추정치들을 보이고 있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참여자가 많을수록 고용효과가 더 뛰어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그 두 가지 사업 모두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더 큰 효과를 보

<표 3-17> 고용규모 변화율의 영향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	풀링
상수	-0.203 (0.094)	-0.189 (0.071)	-0.201 (0.037)	-0.204 (0.040)
청년내일 참여자 비율	-	0.029*** (0.011)	-	0.028*** (0.010)
전체 근로자 수 대비 두 사업 참여자 비율	0.009*** (0.000)	0.007*** (0.000)	0.006*** (0.000)	0.007*** (0.000)
약정 임금	0.086*** (0.020)	0.056*** (0.018)	0.036*** (0.008)	0.055*** (0.009)
기업규모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서울	-0.039 (0.026)	0.004 (0.021)	-0.010 (0.012)	-0.016 (0.012)

〈표 3-17〉의 계속

	2015년	2016년	2017년	풀링
부산	-0.087*** (0.032)	-0.033 (0.025)	-0.022 (0.014)	-0.046*** (0.014)
대구	-0.033 (0.035)	-0.019 (0.027)	-0.025 (0.016)	-0.026* (0.016)
인천	-0.037 (0.035)	-0.015 (0.028)	-0.011 (0.016)	-0.022 (0.016)
광주	0.012 (0.043)	0.007 (0.032)	-0.014 (0.017)	-0.004 (0.018)
대전	0.025 (0.036)	0.039 (0.031)	0.002 (0.018)	0.026 (0.017)
울산	-0.005 (0.054)	-0.047 (0.039)	0.017 (0.020)	-0.012 (0.022)
강원	0.000 (0.052)	0.092*** (0.041)	0.006 (0.022)	0.031 (0.023)
경기	0.006 (0.027)	0.027 (0.021)	0.005 (0.012)	0.012 (0.012)
충북	0.015 (0.047)	0.036 (0.033)	-0.018 (0.017)	0.004 (0.019)
충남	0.021 (0.040)	0.068** (0.031)	0.017 (0.017)	0.033* (0.018)
경북	-0.053 (0.034)	-0.015 (0.027)	-0.002 (0.015)	-0.024 (0.015)
경남	-0.099*** (0.035)	-0.014 (0.028)	-0.012 (0.016)	-0.040** (0.016)
전남	-0.048 (0.045)	0.000 (0.036)	-0.015 (0.020)	-0.021 (0.020)
전북	-0.031 (0.039)	-0.038 (0.030)	-0.004 (0.017)	-0.025 (0.017)
제주	-0.018 (0.084)	0.041 (0.064)	0.015 (0.046)	0.011 (0.040)
세종	0.075 (0.134)	0.168* (0.097)	-0.079 (0.049)	0.044 (0.055)
농림어업	-0.164 (0.342)	0.000 (.)	0.188 (0.131)	0.017 (0.174)
제조업	0.015 (0.085)	0.056 (0.063)	0.143*** (0.033)	0.075** (0.036)
전기/가스/증기/수도	-0.357 (0.298)	0.214 (0.175)	0.117 (0.095)	0.057 (0.107)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0.022 (0.153)	0.119 (0.104)	0.121** (0.053)	0.083 (0.060)
건설업	0.203 (0.341)	0.089 (0.275)	0.135 (0.095)	0.123 (0.125)
도소매업	-0.017 (0.086)	0.030 (0.063)	0.117*** (0.033)	0.046 (0.036)
운수업	0.017 (0.092)	0.001 (0.069)	0.118*** (0.036)	0.049 (0.039)
숙박/음식업	-0.066 (0.120)	-0.076 (0.090)	0.092** (0.044)	-0.008 (0.05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018 (0.086)	0.084 (0.064)	0.145*** (0.033)	0.086** (0.036)
금융보험업	0.183* (0.110)	0.066 (0.084)	0.202*** (0.050)	0.154*** (0.049)
부동산업/임대업	0.057 (0.112)	0.073 (0.085)	0.135*** (0.052)	0.093* (0.05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013 (0.085)	0.050 (0.063)	0.119*** (0.033)	0.064* (0.036)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0.025 (0.088)	0.015 (0.066)	0.148*** (0.035)	0.065* (0.037)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0.110 (0.413)	0.033 (0.333)	-0.002 (0.256)	0.071 (0.204)
교육서비스업	-0.097 (0.101)	-0.051 (0.076)	0.076 (0.039)	-0.018 (0.043)
보건업/사회복지	0.189* (0.098)	0.127* (0.075)	0.172* (0.035)	0.146*** (0.039)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112 (0.102)	-0.185** (0.080)	0.055 (0.049)	-0.080* (0.046)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0.036 (0.090)	0.047 (0.068)	0.105*** (0.036)	0.069* (0.038)
2016년	-	-	-	0.004 (0.006)
2017년	-	-	-	-0.007 (0.012)
R ²	0.076	0.075	0.184	0.085

주 : * p<0.10, ** p<0.05 *** p<0.01

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가 <표 3-18>에 정리되어 있다. 근로자 변화는 2015년과 2016년은 전년도 말 대비 당해 연도 말 근로자 수 변화율이고, 2017년의 경우에는 2016년 말 근로자 수 대비 2017년 11월 말 근로자 수로 측정하였다.

그 통계 결과들을 보면, 2016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비참여 사업체 대비 고용증가분 3.55명, 고용증가율 6.67%p만큼 고용성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그 사업의 고용효과가 조금 더 낮아져서 비참여자 대비 고용증가분은 3.08명, 고용증가율은 4.8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인턴사업도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비참여자보다 2.33명의 고용증가분과 4.85%p만큼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6년 청년인턴사업은 2.99명의 고용증가분과 5.88%p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009~2012년 청년인턴사업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김두순 외(2013)에서는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가 1.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5~2016년의 고용효과가 1~1.5명 정

<표 3-18> 사업 유형별 고용 변화: 사업체 단위

		참여 기업(A)	비참여기업(B)	격차(A-B)
2015년 (청년인턴)	고용규모 변화	3,248명	0.916 명	2,332명
	고용증가율	10.883%	6.034%	4.850%p
2016년 (청년인턴)	고용규모 변화	3,098명	0.111명	2,987명
	고용증가율	9.684%	3.802%	5.883%p
2016년 (청년내일)	고용규모 변화	3,997명	0.448명	3,550명
	고용증가율	11.370%	4.705%	6.665%p
2017년 (청년내일)	고용규모 변화	3,355명	0.272명	3,083명
	고용증가율	9.524%	4.672%	4.852%p

주: 2015년과 2016년은 1년간 고용변화이고, 2017년은 11개월간 고용변화임.

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5절 소 결

이상으로 본 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 현황과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비교 연구를 위해서 2015~2016년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도 함께 추정하였다. 사용 자료는 일모아 DB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청년인턴사업 참여자 정보와 고용보험 DB의 직업력, 비참여자 정보 등을 결합하여 만든 자료이다.

분석 결과 흥미로운 점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우선 참여자들의 인적 특성을 정리하면, 여성 참여 비율은 35% 전후이고 평균 연령은 25세 정도 등이었다. 학력별로는 대졸자의 참여비율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전문대졸과 고졸이 20%대 초반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적 특성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 등 수도권이 55% 정도로 가장 높고, 부산과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권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대 초반으로 가장 높고,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고임금 업종도 꽤 높은 참여비율을 보이고 있다. 고임금대의 분포는 임금에 관한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현저하게 높은 임금을 받는 참여자들도 꽤 많이 존재하고 있다. 가령 최저임금의 175%를 받는 참여자의 비율이 2~4% 정도 되고, 최저임금의 150% 이상을 받는 참여자의 비율도 10% 정도는 되고 있다. 고학력 기술직 근로자들을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것이 사업의 정당한 목표라고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임금 업종이면서 고임금 직종들도 이 사업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사중손실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2016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17년에 본 사업을 출범시켰다. 7월부터 시작한 2016년 시범사업의 경우 목표 참

여자 수를 다 채우지 못했는데, 2017년에도 참여자 수 흐름을 볼 때 목표 인원 수를 채우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인센티브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 사업의 참여자 모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업 참여자의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 성과들을 보면, 먼저 고용유지율(또는 중도탈락률)이나 수료 후 취업률 등에서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유지율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비참여자보다 현저하게 높고,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3개월까지의 유지율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에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1년 이상 고용유지율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인턴사업을 현저하게 능가하고 있다. 코스 해저드모형의 추정 결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자들이 비참여자거나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보다 이직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 단위 분석에서 2015년 청년인턴사업 참여 기업들 중 26.5% 정도가 그 다음해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은 모두 2017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사업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청년인턴사업은 사업체당 평균 2.3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는데, 내일채움공제사업은 2.1~2.4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의 고용 변화는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서 채용한 근로자 수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은 이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대부분 이 사업들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기업단위의 고용변화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

인데,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성향점수매칭법(PSM)에 기초한 분석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는 2016년의 경우 3.55명(고용증가율은 6.67%p)이고, 2017년의 경우에는 3.08명(고용증가율은 4.85%p)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는 2015년의 경우 2.33명(고용증가율은 4.85%p), 2016년의 경우 고용증가분 2.99명(고용증가율은 5.88%p)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청년인턴사업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표 3-1〉 사업 비참여자들의 지역별 구성

	2015년(N=23,612)	2016년(N=25,611)	2017년(N=25,810)
서울	0.54 (0.50)	0.54 (0.50)	0.49 (0.50)
부산	0.02 (0.13)	0.02 (0.14)	0.02 (0.13)
대구	0.01 (0.10)	0.01 (0.12)	0.02 (0.13)
인천	0.04 (0.20)	0.04 (0.19)	0.05 (0.21)
광주	0.00 (0.07)	0.00 (0.07)	0.01 (0.09)
대전	0.01 (0.11)	0.01 (0.10)	0.01 (0.10)
울산	0.01 (0.10)	0.01 (0.08)	0.00 (0.07)
강원	0.01 (0.09)	0.01 (0.10)	0.01 (0.11)
경기	0.27 (0.44)	0.26 (0.44)	0.28 (0.45)
충북	0.01 (0.11)	0.01 (0.11)	0.02 (0.12)
충남	0.02 (0.14)	0.02 (0.15)	0.02 (0.14)
경북	0.01 (0.11)	0.02 (0.13)	0.02 (0.13)
경남	0.04 (0.19)	0.03 (0.17)	0.05 (0.22)
전남	0.00 (0.07)	0.01 (0.09)	0.01 (0.08)
전북	0.01 (0.08)	0.01 (0.09)	0.01 (0.09)
제주	0.00 (0.03)	0.00 (0.03)	0.00 (0.02)
세종	0.00 (0.05)	0.00 (0.05)	0.00 (0.05)

〈부표 3-2〉 사업 비참여자들의 산업별 구성

	2015년(N=23,612)	2016년(N=25,611)	2017년(N=25,810)
농림어업	0.00 (0.03)	0.00 (0.03)	0.00 (0.04)
광업	0.00 (0.01)	0.00 (0.02)	0.00 (0.05)
제조업	0.24 (0.43)	0.24 (0.43)	0.28 (0.45)
전기/가스/증기/수도	0.00 (0.05)	0.00 (0.04)	0.00 (0.05)
하수폐기물/원료재생/환경복원	0.00 (0.03)	0.00 (0.04)	0.00 (0.03)
건설업	0.02 (0.15)	0.02 (0.13)	0.03 (0.16)
도소매업	0.12 (0.33)	0.12 (0.32)	0.12 (0.33)
운수업	0.03 (0.16)	0.02 (0.14)	0.02 (0.15)
숙박/음식업	0.04 (0.19)	0.04 (0.19)	0.04 (0.18)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11 (0.32)	0.12 (0.32)	0.09 (0.29)
금융보험업	0.03 (0.17)	0.04 (0.19)	0.03 (0.17)
부동산업/임대업	0.01 (0.09)	0.01 (0.09)	0.01 (0.09)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07 (0.26)	0.05 (0.22)	0.06 (0.24)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0.17 (0.37)	0.17 (0.37)	0.15 (0.3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0.00 (0.05)	0.00 (0.05)	0.00 (0.05)
교육서비스업	0.01 (0.12)	0.02 (0.12)	0.02 (0.14)
보건업/사회복지	0.08 (0.28)	0.10 (0.30)	0.10 (0.3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0.02 (0.14)	0.03 (0.17)	0.02 (0.14)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	0.03 (0.18)	0.03 (0.17)	0.02 (0.15)

제 4 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실태조사(FGI)

제1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현황 및 점검사항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현황

가. 청년인턴사업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정부는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의 고용유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은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취업성과가 높았지만 주요 지원대상이 사업주여서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접 인센티브가 적고, 그래서 청년인턴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장기근속을 유도할 정책 지원 방안이 취약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정부 예산지원을 사업주가 아닌 청년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 종료 후 취업해서 장기근속을 할 경우 목돈마련에 활용되도록 지원내용을 개편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

기근속을 유도하자는 데 정책적인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년 취업지원 3개사업(중소기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이며, 해당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상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벤처지원업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 가능)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지원내용은 16~34세 청년들에게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 적립(매월 12.5만 원) 시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 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에는 청년 지원 사업 3개 사업별로 청년공제 참여기업에 지원하는 데 청년인턴제를 통해 인턴수료자를 정규직 전환한 경우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500만 원, 취업성공패키지Ⅱ 이수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600만 원을 지원하고 일학습병행 훈련기간 동안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였다. 고용부는 2017년 8월에 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청년내일

(그림 4-1)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채움공제사업의 정부지원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사업주 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렇게 정부지원금을 상향 조정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2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에 따른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17년 8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 요건(청년 및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은 청년인턴제나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수료한 청년이 대상이 되며, 기업은 일종요건을 구비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청년인턴제의 경우 인턴제 참여 및 인턴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취업)한 청년들이 참여대상이고, 인턴기간은 1~3개월까지 월단위로 청년과 기업 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출신자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규직으로 전환(취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취성패 I(취약계층) 유형에 참가한 경우는 초기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직업상담)를 마치고 2단계(직업훈련) 또는 3단계(취업알선)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 청년취업성공패키지 II 유형에 참여한 청년으로서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자(기한은 최종단계 이수 후 1년 이내) 등이다.

일학습병행제 사업 출신자의 경우 일학습병행훈련 수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청년들이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외부평가 합격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 훈련과정 종료 후 일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청년(훈련근로자 → 일반근로자)이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이 사업참여 대상기업이다. 이들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 근로자가 갈만한 괜찮은 일자리로 채용할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하여 참여기업

은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2017년의 경우 월 149만원)을 주도록 조건을 설정하였다. 또한, 해당 기업의 고용안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기간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에 한해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기업 구비요건〉

-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기업
- ◆ 약정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
 - * '17년도 주 40시간 기준 월 149만 원 이상
- ◆ 가입기간에 당해 사업장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실이 없는 기업
- ※ 기타 자격요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 정한 바에 따름

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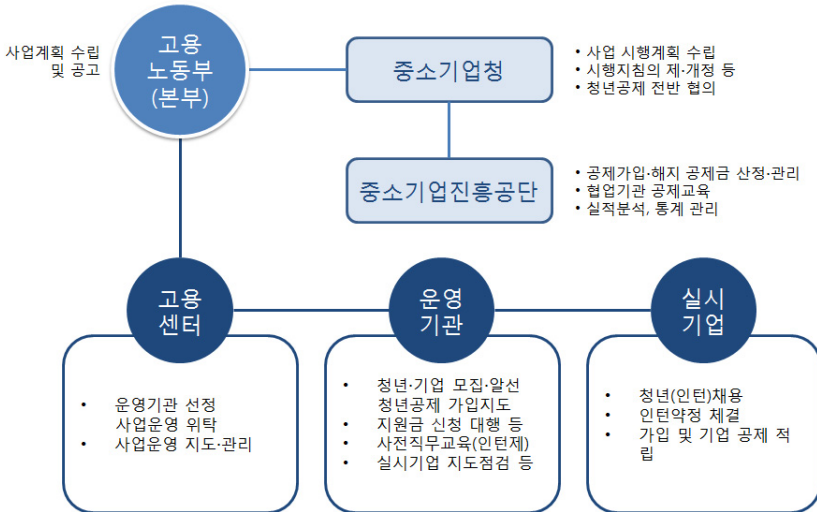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은 고용부가 사업계획 및 추진 전반을 책임지고, 고용센터에서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을 위탁하면, 사업운영기관에서 기업 구인 수요와 청년들의 구직 수요를 연결해서 정규직으로 채용 시 공제사업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운영기관을 선정할 때, 위탁기관은 기존에 청년인턴제와 일학습병행제 참여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인턴제 운영기관이, 취성패 참여 청년·기업에 대해서는 취성패 운영기관이 각각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기관은 사업 위탁 운영기관이다. 운영기관에서는 구인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모집해서 구인-구직 수요를 연결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운영기관에서는 구인 중소기업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운영기관의 구인 중소기업 발굴팀에서는 운영기관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구인수요가 있는지 찾아보고, 채용박람회에도 참여한 구인기업과 연락해서 구인수요를 발굴한다. 청년 구직자 발굴은 인턴

[그림 4-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계획



넷 잡사이트를 많이 활용한다. 인터넷 잡사이트에 광고도 올리고, 잡사이트에 올라오는 이력서를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기업을 추천하거나 해서 취업과 연결시킨다. 대학교에서는 취업지원실이나,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들을 통해서 구직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다.

운영기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근로자가 근로를 계속하는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은 직접 정기 점검을 나간다. 이외에도 수시로 메일이나, 전화를 하면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점검을 한다. 청년 근로자의 경우 전화면담을 수시로 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신청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라. 2017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계획

정부는 2017년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가 대상도 2016년 1만 명에서 5만 명을 목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2016년까지 시행돼온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전제로만 시행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일학습병행제 참여자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목표는 청년인턴제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3만 명, 취업성공패키지를 수료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1만 7,000명,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거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 3,000명 등 총 5만 명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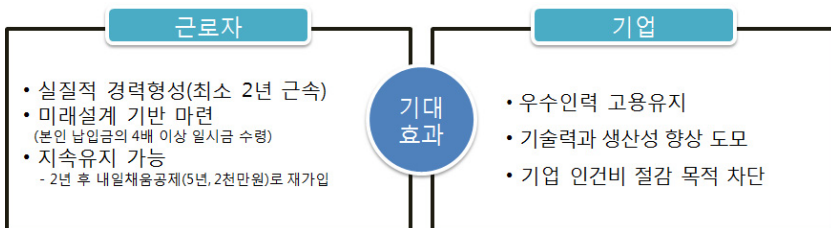
가. 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목적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하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을 하면서 실질적인 경력형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들이 2년 동안 근속하면서 한 달에 12만 5,000원을 납입(2년에 300만 원)하면 2년 뒤에는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보전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설계를 위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숙련형성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장기근속을 하면서 기술력을 쌓고 숙련형성이

(그림 4-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기대효과(고용부)



되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도 안정적인 생산 서비스를 유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관련 점검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정책성과 평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적합한 청년 인재들을 채용케 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애초의 정책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를 점검하고자 한다.

첫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사업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경력형성과 실질적인 기술력 제고를 돕고, 임금보전을 통한 경제적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기업에는 유능한 청년인재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둘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정부의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 고용부는 2017년에 5만 명의 청년들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업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셋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인턴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업 초기다 보니, 사업 운영기준이나 절차가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운영기관에서도 사업운영 경험 부족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청년들과 중소기업들도 사업 취지를 잘 모르거나, 활용하는 방

법을 몰라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까지의 시행실적과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업 목적과 계획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넷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 또는 운영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센터나, 운영기관 담당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중소기업 담당자들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수행에 참여해온 고용부, 고용센터, 사업 운영기관 관계자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 및 중소기업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FGI)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운영현황과 운영개선 방안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한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태조사를 위한 FGI 실시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태조사 FGI 대상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직접일자리 사업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과 중소기업 담당자, 그리고 사업 운영기관, 고용부 및 고용센터 담당자 등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 장애요인,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FGI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사업 참여기업 노사와 사업 운영기관, 고용부 고용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부산지역 사업체 임원 및 대표 3명, 사업참여 청년 근로자 3명 등 2개 팀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는 서울지역 운

영기관(취업알선 전문업체) 담당자 3인, 고용센터 담당 직원(서울 3명, 부산 3명), 고용부 청년취업지원과 담당자 2인에 대한 FGI를 실시하였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태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내일채움 공제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 운영과정에서 어떤 장애요인이 있는지,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 인지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목적에 맞게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경력형성 효과, 목돈마련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우수인력 채용과 인건비 절감효과, 청년층 장기근속을 통한 기술력과 생산성 향상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점검하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2017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중도 퇴사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점검하였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기관과 고용부 고용센터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 애로사항에 대한 점검과정에서 사업 추진 현장 이해관계자들의 진단과 제언을 토대로 사업 운영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효과 분석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평가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채용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업

참여를 통해 청년들을 채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저희 같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직률도 높고요. 기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으로 임금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근로자들이 2년 정도 근속을 하면 우리 회사에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아서 지난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에도 참여해서 16명을 채용해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사실 청년인턴제는 회사에 이익이 많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내일채움공제사업을 하면서는 정부지원이 거의 근로자한테 집중되니까 회사한테 오는 돈은 없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계속 근속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는 좋죠. 그만큼 회사가 잘나가는 거니까. 저희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젊은이들에게는 고용안정을 주고, 회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임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로 청년 근로자가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서 기업 조직문화를 익히고, 숙련형성이 되면서 기업 생산성 제고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젊은 친구들을 채용해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면 저희 회사의 문화라든지 직원 상호 간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되고, 정밀가공 부품을 생산하는 데도 숙련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CNC 선반으로 정밀가공을 주로 하기 때문에 2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공에 대해 눈을 뜨게 될 수 있죠. 또, 직원들이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 피로하지 않습니까? 그 피로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생되거든요. 한 2년 지나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임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는 그동안 청년들을 채용하기 어려웠는데, 사업 참여를 통해서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도 제시했다.

“저희 직원들은 건설감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주력은 대부분 50대 장년 들입니다. 건설감리 분야는 일감이 많아지면 그만큼 전문인력 투입을 늘 려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은 우리 분야를 선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 학형 일학습병행제(IPP)사업 수료생들을 채용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신규인력들 미리 뽑아서 신규인력들이 한번 경험해보고, 저희들이 신규인력들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고용하니깐, 젊은 친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중소기업 임원>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효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사업 참여 이후에 2년 근속 하면 목돈마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이 러한 목돈마련 기회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회사에 들어와서 보니 까 이거 괜찮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오래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산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청년>

“첫 달에 월급 받고 정말 그만둘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일하는데 월 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까 그러다가 이거 지금 내일채움공 제 때문이라도 제가 2년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 제 취직을 했으니까 월급을 받으면 따로 적금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마음 먹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 령게 개인적으로 안 하더라도 목돈마련을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 고요. 친구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하니깐 일단 2년은 무조건 버티 라면서 힘들어도 버티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취 업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지원

내용이 기존 정규직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효과를 실감하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취업해서 보니까 저희는 좋은데, 회사를 전일부터 다녔던 사람들 허탈감을 느끼더라고요. 자기는 2년 넘게 다녔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도 저는 2년 있으면 목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는 거 같아요. 자기는 다닐 때 그런 거 없었다고.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냥 따로 하는 게 있다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청년>

“저희 친구들 중에 공무원 시험 오래 준비를 하다 포기하고 취업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그런 친구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게 있다고 소개해준 적이 있어요. 대기업이랑 중소기업 큰 차이가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일채움공제를 해주는 중소기업을 가게 되면 연봉으로 따져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갈 만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했죠. 그 친구도 서울에서 내일채움공제가 되는 회사를 찾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지역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청년>

다. 청년인턴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장기근속 효과 비교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이 두 가지 사업에 모두 참여했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는 두 사업의 장기근속 유도 효과를 비교하면서 청년인턴사업에 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의 중도 퇴사 비율이 낮고, 장기근속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용센터의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모두 경험했던 사업 담당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장기근속 유도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희 회사에서는 내일채움공제로 채용한 직원이 16명인데 이 중에서 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청년인턴사업을 할 때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할 때가 중도 퇴사율이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부산지역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청년인턴사업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비교해보면 6개월 근속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 같아요. 초반에는 청년인턴이든, 청년내일채움공제든 이 회사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뛰어나가는 거죠.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친구들은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2년 계속 근속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아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2년 근속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근속한 청년들은 2년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고용센터 사업 담당자>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다른 취업지원제도와 연계효과

가. 고용부와 부산시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연계효과

부산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해서 2년 근속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을 더 연장할 경우 1년에 대해서 내일채움공제사업과 동일한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을 연계해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원래 부산시에서는 지자체 예산으로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작하니까,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은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업 연계로 사업의 실효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작하니까, 부산시에서 여기에 착안해서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고용부와 부산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부산시 물량이 작년에 150명을 받았습시다. 150명에 대해서 저희가 300만 원 추가지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이 손해 보는 게 없잖아요. 어차피 300만 원 기업기여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을 부산시 예산으로 자기들이 받게 되니까. 그래서 부산청은 실적이 좋았던 편입니다.”

“부산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산시 예산은 청년 1인당 7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2년+1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나 1년을 더 참여할 청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나. 지역 경제단체나 대학·고등학교와 연계한 청년 취업지원 효과

부산지역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을 지역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에 위탁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청년들 채용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확대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경제단체는 중소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갈 만한 구인수요를 발굴하기 쉽고, 지역 대학이나 고등학교는 청년 구직자들을 발굴하는 데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경제단체나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저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위탁기관을 정할 때 위탁업체가 구인발굴이라든지 구직자 발굴이 잘되는 업체인지 이런 걸 보거든요. 이 중에서 구인발굴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역 경총이나 상공회의소는 회원사들이 있으니까 구인기업은 회원사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찾기가 쉬워서 사업 운영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구직자들은 보통은 대학과 연계하는 데도 있고요. 고등학교하고 협업해서 하는 운영기관들도 있습니다.” <부산 고용센터 담당자>

제3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장애요인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의 중도퇴사 문제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퇴사 이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퇴사하는 경우는 대부분 ①

취업한 회사에서 자기발전전망을 찾지 못하거나 ② 임금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 실망해서 퇴사하거나 ③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의 기업에 취업이 돼서 중도퇴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했다가 1개월 만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소개 받고 이거 괜찮겠다 싶어서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오래 근무해 봤자 나 자신의 미래를 찾을 수 없었다. 작은 회사다 보니까 조직체계도 없고, 임금수준도 낮은 편이었다. 같이 일한 10년 근무하신 부장님이 계셨는데, 10년 동안 임금이 거의 안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런 회사에는 오래 근무해 봤자 더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그만뒀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서 2년 일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이지만 그래도 내가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여야지 그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후 중도퇴사 청년>

“중도퇴사한 청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영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예요.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가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한 거랑 많이 틀리겠죠. 근로조건이 열악하죠. 저희가 점점 나가 보면 사무실 꾸며놓고 있는 곳도 있지만, 공사 작업장에 컨테이너에 이런 식으로 한 데도 있어요. 30인 미만 기업들 중에서도 튼실한 기업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취업을 해야 되겠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일 해보니 이걸 아니다 싶어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서울지역 사업 운영기관 상담사>

“저희 회사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취업했다가 퇴사한 친구가 2명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교대근무를 하다 보니까 심신이 피로해서 나가거나, 지금보다 월급을 더 준다는 회사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도에 퇴직한 친구들은 당장 다른 데서 월급 더 준다고 하면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부산지역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퇴사하는 청년들의 경우 2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쥌 수 있다는 기대보다, 지금 당장 다니고

있는 회사의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근로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요. 5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사업참여 청년들 입장에서는 인턴기간 끝나고 정규직 전환해서 2년 동안 내가 유지했을 때 1,2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회사의 근로조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리 2년 뒤에 1,200만 원 목돈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과감히 포기하고 퇴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서울지역 사업 운영기관 상담사>

“청년 취업자들은 2년 근무하고 1,2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일부는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2년 뒤의 목돈보다 당장 수입이 더 중요한 거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들이 월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라지만 중소기업에서 대부분 급여가 110%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서 12만 5,000원이 큰 거죠. 예전에 학자금대출 받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서울 와서 방세 내고, 통신비 내고, 한 달 해보다가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지역 사업 운영기관 상담사>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퇴사가 많은 사업장 특성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이 중도퇴사하는 사업장 중에는 규모가 작은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큰 중견기업에서는 근로조건도 양호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에, 3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당장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기대도 낮아서 중도퇴사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운동기구를 생산도 하고, 수입판매도 하는 조그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 취업할 때 2년 일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해서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가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다. 그 회사는 직원이 10명 밖에 안 되는데, 평사원은 나 혼자였다. 다 임원이고, 간부인데 나 혼자만 그냥 사원으로 일하려니 오래 버틸 수가 없었다. 아무리 목돈마련도 좋지만 도저히 계속 일할 수가 없었다.” <내일채움공제 참여 후 중도퇴사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반응은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전망이 좋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년 근무하면 1,6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막 적극적으로 취업하려고 하고, 직장에 취업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가 조금 안 좋으면 청년들은 이직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지역 사업 운영기관 상담사>

“작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만이 대상이었는데, 조금 완화해서 20인 이상 사업장만 보낼 수 있도록 했는데 그마저 이번에 또 풀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제대로 가는 방향성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중도퇴사자가 나온 사업장을 샘플링해서 보니까 30인 이하 영세 기업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경우가 가장 많더라고요. <부산 고용센터 사업 담당자>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뉘이죠. 최소한 애들이 5인 이하 기업에 안 가려고 해요. 왜냐면 동료가 2~3명 정도는 있어야지 애들이 근무를 하잖아요. 5인 이하에 동료 없잖아요.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는 애들은 중도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퇴사율이 높은 근로자 특성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취업한 경우가 중도퇴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년들은 장기근속보다는 군 입대 전의 일시적인 취업 성향이 강하다 보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장기근속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 중에 중도퇴사자 비율이 제일 높았던 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경우예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여기에 2년을 근무할 거라고 생각하고 취업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알바라고 생각하고, 군대 가기 전에 잠시 거쳤다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탁기관 입장에서 운영기관들은 일단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가장 손쉬운 고등학생들을 근로환경도 열악하고, 전망도 불투명한 중소기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중도 퇴사자가 많아지는 거죠.” <부산 고용센터 사업 담당자>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의 애로사항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구인중소기업 발굴의 어려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들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참여 구인사업체를 발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참여하는 기업 측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고,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등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보니 중소기업 측에서는 선뜻 참여하려고 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운영기관들이 취업알선 전문업체인데, 이들 운영기관들은 기존에 청년인턴사업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일학습병행 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인기업을 발굴해 왔지만,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지원금이 별로 없다 보니 이들 중소기업이 사업참여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있다.

“지금 위탁 운영기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사업체를 모집하는 게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사실상 2년에 200만 원밖에 가져가는 게 없는데, 이거 가지고는 서류작업 인건비도 안 된다는 거죠. 중소기업들은 청년의 장기근속도 중요하지만 인건비 보조금을 보고 청년인턴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기업들에 주는 게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 이전에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 위탁 운영기관 담당자>

“제일 중요한 게 구인 사업장 발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구인기업 발굴팀이 따로 있어요. 구인발굴팀에서는 저희 회사에서 관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구인수요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요. 채용박람회에는 빠짐없이 가고 있어요.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구인기업 명함 다 받아서, 연락해가지고 구인 수요를 발굴하는 거죠. 저희가 면접자들도 직접 데리고 가서 면접 보게 하고, 그렇게 취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제출서류 등 까다로운 운영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하면서 위탁 운영기관이나 사업참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서류업무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다. 사업 초기다 보니 고용센터에서 운영절차를 더 까다롭게 점검하고, 자료제출 요구도 많다 보니 이러한 서류작업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에서 5회차로 점검을 하는데, 매 회차 점검마다 임금지급 관련 자료, 근로계약서 등 자료를 다 제출해야 돼요. 고용센터에서는 정부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는 임금대장이 정확하게 구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센터에서 계속 확인요청이 들어가는 거죠.” <서울지역 위탁 운영기관 담당자>

“중소기업에는 지금 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면서 서류 관련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취약해요.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별게 아닌데 이분들은 엑셀을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부산고용센터 사업 담당자>

“임금이 특정 달에 조금 적게 나갔다. 이러면 왜 적게 나갔는지 사유를 내라. 이런 거죠. 한 달간 근로자가 그냥 무단결근했는데 조금 이따가 온다고 해서 또 다니게 했어요. 이러면 임금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업에 지원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현장에서 하다 보면 너무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부산고용센터 사업 담당자>

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물량할당 방식의 한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대부분 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해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사업위탁을 하면서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목표 물량을 할당해 주다 보니 위탁 운영기관들은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방식을 동원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위탁 운영기관은 고용부 고용센터에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내년에도 사업을 위탁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시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게 물량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청년들이 취업해서 비전을 찾기 어려운데도 그냥 보내서 취업성공 실적으로 잡아서 물량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은 중도에 탈락할 가능성이 크죠. 중도탈락 사례의 일부는 이렇게 처음부터 취업시키지 말아야 할 데에 취업시킨 거예요.”

“위탁 운영기관에서는 할당된 물량을 채우려면 그 기관의 상담사들에게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운영기관 상담사들도 청년들에게 당신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 기업 열악하지만 그래도 급여를 받아서 생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취업을 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 청년의 적합 직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열악하더라도 앞으로 전망이 있는 직무에 알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취업률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청년들에게 너 가서 면접 꼭 보고 꼭 이번에 취업해야 돼. 한 달 하고 나오더라도 취업해야 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죠. 제가 만난 상담사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애한테 그렇게 내가 하고 나니 전문가라는 상담원으로서의 자괴감이 들고 눈물을 쏟은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 운영기관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부담 증가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기관은 주로 취업알선 전문업체이거나, 지역 경총·상의 등 경제단체 등에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운영기관은 정부의 고용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서 실행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사들의 임금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위탁 운영기관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업상담사들의 업무 부담이 이전의 다른 사업보다 더 크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들의 이직률도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전문적인 고용지원서비스에도 차질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놓고 있다.

“청년인턴사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희 업무 부담이 많이 늘었어요. 청년인턴 때는 400~500명 이상 배정받으면 그중에 40% 정도만 현장점검을 나갔어요. 나머지는 기업별 교육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그랬는데,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100% 현장점검을 나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기관 입장에서는 운영비는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원내용이나 구비서류도 복잡하다 보니까, 이전에 청년인턴사업에서는 5분이면 안내할 것을 20~30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기업도 생소하고, 참여자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관리를 하면 청년 근로자 1인당 25만 원을 받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 관리를 위한 제반 서류가 너무 많아요. 급여이체대장 등 행정서류들을 다 제출해야 되고, 서류가 하나로 통합되는 게 아니고, 발급받아서 납입증명서라든지 가상계좌를 받아요. 서류 서식이 있으면 취업지원금을 참여 청년이 작성하고, 참여기업은 지원금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 쪽으로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센터에 제출을 하는데, 중복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상담사 1인당 200명 정도를 관리를 해요. 고용부에서 감사 나오면 인원 수가 150명이거든요.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요.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하면서 저

회 팀 상담사들 중에 퇴사자가 많아졌어요. 행정업무며, 전화 스트레스에 힘들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가. 사업참여 신입직원과 기존 직원의 임금 역전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사업참여를 하면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월 40만 원의 추가 급여가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직원들보다 신입 직원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문제가 발생해서 회사 인사관리에서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위탁기관에서는 기존에 근무하던 정규직 청년을 퇴사시켰다가 다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키라고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들 실적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해서 2년 근무하면 1,200만 원 목돈이 만들어 지는데 본인은 12만 5,0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사실상 참여 청년들에게는 월급을 40만 원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채용을 하고 나니까 기존 정규직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기존에 일했던 직원들보다 40만 원 정도를 더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청년 정규직 사이에서 임금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중소기업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회사로서는 난감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노사협의회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양해를 얻긴 했지만 회사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작 이후 참여자만 정부지원의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조금 일찍 들어왔다는 게 뭐가 죄

예요. 일찍 들어왔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7월 이후에 들어온 친구들은 혜택을 받고. 중소기업에서 월 40만 원이 작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저희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하려고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하는데, 기존에 일하던 친구들이 왜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느냐? 같은 청년인데 왜 우리한테는 기회를 안 주느냐? 이런 전화가 오면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도가 이렇게 설계가 돼서 안 된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문의를 하는 청년들 보면 안타까운 거죠.” <부산 고용센터 사업 담당자>

나. 최저임금 110% 이상 지급기준에 따른 부담 요인

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은 사업 참여 청년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현재 기존 정규직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하인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르게 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근로자 임금이 기존 정규직 임금을 한참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회사 내의 형평성 있는 임금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는데, 이게 고민입니다. 지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려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최저임금 110%가 149만 원인데, 내년에 최저임금 110%를 맞추려면 174만 원 이상을 줘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는 제조업이라서 젊은 친구들은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거든요. 그래도 연장근로시간이 많아서 한 달에 280만 원 이상 가져가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신입직원들을 최저임금 110% 맞춰준다고 했을 때 기존 직원들보다 신규로 들어온 직원이 월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이거는 저희들로서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일학습병행제 출신자를 내일채움공제로 채용할 경우 중복지원 논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청년인턴, 일학습병행제, 취업성공패키지를 거친 청년들이다. 그런데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했던 청년이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해당 중소기업에서는 일학습병행제와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한 기업에는 월 45만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데, 정부는 이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서 해당 청년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시키게 되면 사업주가 담당하는 공제금 400만 원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했던 사업주 측에서는 일학습병행제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 고용장려금 성격을 띠고 있어 목적이 다른데, 왜 중복지원이라고 규정하는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학습병행을 하게 되면 참여기간 동안 월 45만 원씩 임금에 대한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돼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업에서는 사업주가 담당하는 공제금 400만 원을 기업 자체예산으로 납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걸 안 주는 이유가 너희는 일학습병행기간 동안 월 45만 원을 썼기 때문에 청년내일공제로 들어오더라도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우리가 지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중복지원이어서. 그러니까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마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들어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정부지원 없이 기업의 생돈을 내고 참여해야 하니까요.”

4.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인지도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해당 중소기업에 채용되기 이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취업하기 전에 대학 지도교수나 주변 친구들도 청년내일채움공

제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6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왔다. TV나 언론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개 기사도 많이 게재하고, 인터넷에도 집중 홍보를 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광고도 많이 했다. 그런데 정작 대학 졸업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은 대부분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저는 이 회사에 취업하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대학 다닐 때나, 주변 친구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 너무 좋은 제도여서 주변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고 있어요.” <부산 사업 참여 청년>

“저희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알선하면서 청년들한테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 안내를 합니다. 청년들을 기업에 취업시키면서 취업담당자들한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라고 직접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도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청년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청년들이나 기업에서는 잘 몰랐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전화도 많이 받거든요. 아직까지 확산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산 고용센터 사업 담당자>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명칭을 금융상품으로 혼동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처음에 내일채움공제사업이 금융상품인 줄 알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공제사업이라고 하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지원을 해야 하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청년도 있었다. 이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명칭이 사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도 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용어가 처음에 들으면 딱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채움공제, 1,600만 원, 그러니까 무슨 은행상품인가 생각을 하

는 사람도 있어요. 유사금융기관에서 사람 꼬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제4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능한 청년 대상 범위 확대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참여경로를 청년인턴사업, 일학습병행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출신자로 정해놓은 상태다. 그런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근속을 하면 사실상의 임금보조를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근로조건도 향상시키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의 괜찮은 일자리에 장기근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전 경로는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생각하면 참여대상을 제한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참여대상 폭을 넓히는 것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경로제한 없이 그냥 16~34세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절차 간소화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참여 청년들에게

는 지원이 많지만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소기업의 운영절차상 부담,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와 같이 5회차 점검을 하면서 임금대장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공제사업 참여기간 중간에 건건이 월 얼마 지급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하면 되고, 공제금 지급은 마지막 20개월까지만 공제금이 납입돼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제금이 제대로 납입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시 노사 상호 간 숙려기간 설정 방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서 참여 청년이 중도에 퇴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 중소기업은 청년 채용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부담이 되고, 청년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러한 중도 퇴사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 전에 기업과 취업희망자가 상대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경험해서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 청년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직원인지를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청년들도 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해 보고, 계속 일할 만한 직장인지를 판단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면 사업 참여 이후에 중도 탈락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때 먼저 중소기업과 청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나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도탈락자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30인 이하 중소기업 참여 시 선별기능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중도퇴사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도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유형, 예를 들어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 고졸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위탁 운영기관들이 할당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장기근속하기 어려운 회사에 일단 취업알선을 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참여 중소기업의 적정성 여부를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기업 중에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런 유형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여부를 재고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별도의 재검토 절차를 둔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 검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고용장려금 사업이다. 그만큼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가 되면 사업 참여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경험한 청년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해 당사자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명칭부터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바로 알기 쉽게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FGI

에서는 현재의 사업명칭을 무슨 금융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먼저 명칭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잘 이해하도록 하려면, 이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사업’,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같은 명칭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대학에서의 홍보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구인광고를 낼 때 해당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사업장임을 공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낼때나 구인광고를 할 때 ‘우리 회사에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아서 2년만 근무하면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도 청년들이 해당 기업을 선택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대학 교육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홍보하는 게 중소기업 취업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 3학년, 4학년 과정의 진로지도 수업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3학년이면 취업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해주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제 5 장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와 정책개선방안

제1절 청년 직접일자리사업의 실질적 고용효과 평가

1. 청년 직접일자리사업 고용효과 평가

우리나라의 청년층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60개 사업에 2조 5,93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6개 사업에 5,913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2016년 기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실제 청년들의 취업지원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일자리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책평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청년직접일자리 사업은 ① 공공업무지원형 ② 경기대응형 ③ 사회서비스형 ④ 노동시장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KDI, 2016).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가인원은 시장참여형이 3만 4,600명, 공공업무지원형이 7,900명, 사회서비스형이 600명 등 총 4만 3,300명이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서 청년인턴사업 참여자가 3만 3,100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한 취업자 수는 3,746명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은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인 중소기업청년인턴제(3,723명)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취업지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시장참여형 직접일자리 사업, 특히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정책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2.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내일채움공제사업 개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직무능력 향상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은 2008년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창출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2016년까지 운영되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중소기업에서 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을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에 기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에 참여가능한 중소기업은 5인 이상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5인 미만은 벤처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인턴기간 3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중소기업), 50만 원(중견기업)을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일정기간 고용유지 시 39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인턴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정기간 근무 시 제조업 생산직은 300만 원, 그 외 업(직)종은 18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을 확대 개편한 사업으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전환)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청년취업지원 3개 사업(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에 참여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만 15~34세 이하 청년이다. 사업참여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내용은 사업참여 청년에게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 원 적립(매월 12.5만 원) 시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각각 적립하여 1,200만 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⁹⁾

나. 중소기업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청년층들의 참여가 많고, 중소기업 취업지원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임금수준을 보면 청년직접일자리 사업 비참여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중도탈락 비율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중도탈락률이 청년인턴사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고용유지기간을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1년 반, 2년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본 결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의 구간별 고용유지 성과는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나 비참여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을 이용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9) 2017년 추경예산편성에 의해서 정부에서 400만 원을 더 지원해 2년 근속 시 1,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2016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비참여 사업체 대비 고용증가분은 3.55명, 고용증가율은 6.67%p만큼 고용성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7년에는 그 사업의 고용효과가 조금 더 낮아져서 비참여자 대비 고용증가분은 3.08명, 고용증가율은 4.85%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청년인턴사업도 유사한 고용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에는 비참여자보다 2.33명의 고용증가분과 4.85%p만큼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2016년 청년인턴사업은 2.99명의 고용증가분과 5.88%p의 고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청년인턴사업의 고용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로 볼 때 청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청년인턴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참여 청년들의 중도탈락률도 낮고, 장기 고용유지 효과도 크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이나,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질 좋은 청년 인재들을 채용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숙련형성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표적인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취업에만 몰릴 것이 아니라,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절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대상 범위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고용효과 실증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인재를 채용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숙련형성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평가를 종합해 본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표적인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대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시행 초기에 사업참여가 가능한 청년대상자를 청년인턴사업, 일학습병행사업, 취업성공패키지 3개 사업 참여자로 제한해 놓았다.

이러한 경로설정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초기에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을 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근로조건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사업 초기에는 이렇게 참여경로를 제한해서 사업취지를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참여경로 제한이 또다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FGI에서는 이런 장애요인이 확인되기도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청년들을 중소기업의 괜찮은 일자리에 장기근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전 경로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생각하면 참여대상을 제한하는 것보다 가능하면 참여대상 폭을 넓히는 것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런 경로제한 없이 그냥 16~34세 청년 구직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경로를 청년인턴사업, 일학습병행사업, 취업성공패키지 3개 사업 참여자로 제한하면서 ①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가입할 수 없고 ② 동일한 사업장임에도 취업 경로에 따라서 3개 사업에 참여한 청년만 선별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 ③ 다양한 참여경로별로 선별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면서 예산집행의 어려움 발생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2017년 8~9월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확대를 위해 ▲워크넷 알선취업, ▲강소기업('17년 16,973개소)·청년친화강소기업('17년 1,117개소) 정규직 취업 시에는 이전의 3가지 참여경로가 아니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참여대상 범위 확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을 꿰찰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적극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초임기준 조정 검토

정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한을 두어 왔다. 이러한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규정은 2017년까지는 실효성이 있지만 2018년부터 최저

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사정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7년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의 70%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고, 90.8%가 100인 이하 사업장인데 이들 중소기업에서는 2018년도 최저임금 110% 지급 규정을 지킬 수 있는 기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2017년 6월)에 따르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계속 높이 올리면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축소(56%), 감원(41.6%) 또는 사업종료(28.9%)로 대응할 것이라 응답하고 있다.

또 한가지 문제는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기존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110%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기업의 약정임금 분석결과, 149만 원('17년 110%)~173만 원('18년 110%) 구간 사이에 약 66.4%의 참여자가 분포되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도 최저임금 110% 이상 임금지급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참여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110%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서 더 많은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이러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의 연계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들은 2년 근속을 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서 장기근속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근속 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중소기업에 맞는 기업특수적인 숙련형성도 되어 있고, 조직문화에도 적응된 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기업 생산성이나 경쟁력 강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료자를 계속 고용하기 위해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는 중소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다.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지원금이 없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사업에도 일부 정부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정부지원금이나 지원 방식은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방안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운영절차 간소화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참여 청년들에게는 지원이 많지만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소기업의 운영절차상 부담, 서류제출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운영의 묘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와 같이 5회차 점검을 하면서 임금대장부터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공제사업 참여기간 중간에 매번 월 얼마 지급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는 고용보험에서 확인하면 되고, 공제금 지급은 마지막 20개월차까지 공제금이 납입돼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금 지급 전에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제금이 제대로 납입이 되었는지 확인하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에게 공제금 납입계좌 확인 공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면 개인별 계좌를 개설한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는 6개월 단계마다 공제금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도 들어가서 공제기금이 쌓이도록 되어 있다. 청년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자신이 받을 목돈이 이렇게 계좌에 쌓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 기업에서 더 오래 일하도록 하는 심리적 지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는 자신의 공제기금 계좌를 확인하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공인인증서를 갖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 위탁운영기관에 물어봐도 되긴 하지만 청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심리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자기 계좌에 돈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청년이 자신의 공제 계좌에 기금이 쌓이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마다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로 ‘당신의 공제금이 이만큼 쌓였습니다.’라고 공지를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30인 이하 중소기업 참여 시 선별기능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중도퇴사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도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유형, 예를 들어 3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 고졸 신입사원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위탁 운영기관들이 할당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청년들이 장기근속하기 어려운 회사에 일단 취업알선을 하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서 참여 중소기업의 적정성 여부를 선별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기업 중에 중도 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런 유형의 중소기업에 대

해서는 사업 참여 여부를 재고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한다든지, 별도의 재검토 절차를 둔다든지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확산을 위한 정책홍보 강화방안

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개정 검토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에게 정부지원금이 가장 많이 제공되는 고용장려금사업이다. 그만큼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 홍보가 되면 사업 참여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경험한 청년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해 당사자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점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성공 여부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년들과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명칭부터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바로 알기 쉽게 개정을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FGI에서는 현재의 사업명칭을 무슨 금융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먼저 명칭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취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을 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라는 점을 잘 이해하도록 하려면, 이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청년들이나 중소기업에서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사업’, ‘중소기업 청년 목돈마련 지원사업’ 같은 명칭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대학에서의 홍보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구인광고를 낼 때 해당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 사업장임을 공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공고를 낼 때나 구인광고를 할 때 ‘우리 회사에 취업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아서 2년만 근무하면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것도 청년들이 해당 기업을 선택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생각하는 청년들에게 대학 교육과정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을 홍보하는 게 중소기업 취업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에서 3학년, 4학년 과정의 진로지도 수업시간에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3학년이면 취업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소개해주는 것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2017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설명회』.
 _____(2017), 『2017년 중앙부처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
 _____(2017), 『2017년 지자체 청년 일자리 사업 현황』.
- 김두순·김봉원·최종일·김정호(201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영향효과』, 고용노동부.
- 남재량·이규용·주무현(200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영향평가』, 고용노동부.
- 류장수(2015), 「청년인턴제의 성과 분석」,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 류장수·김종한·박성익·조장식·하봉찬(2012),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 실태조사 및 고용효과 심층 분석평가』, 고용노동부.
- 류장수·박성익·조장식·정현주(201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박성익·류장수·김종한·조장식(2016),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자의 재직기간 분석」,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7(2), pp.285~294.
- 이규용 외(2011),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영민 외(2015), 『청년고용 제고를 위한 정책재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고용노동부.
- 주무현 외(2016), 『청년고용대책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윤희숙 외(2016), 『일자리사업 전면개편 심층평가 연구』, KDI.

◆ 執筆陣

- 이성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용진(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 | | |
|---------|--|
| ▪ 발행연월일 | 2017년 12월 26일 인쇄
2017년 12월 29일 발행 |
| ▪ 발 행 인 | 김 승 택 원장직무대행 |
|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 ▪ 조판·인쇄 | 고려씨엔피 (02) 2277-1508/9 |
| ▪ 등록 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 번호 | 제13-155호 |

© 한국노동연구원 2017 정가 6,000원

ISBN 979-11-260-0168-2